

언론중재

ISSN 2005-2952

2018 Autumn Vol.148

04

Focus On Media

통일언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제언

74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모바일, 수백년 중국인들의
뉴스 소비 습관을 송두리째 바꾸다

82

사건 속 법률

디지털 성범죄라는 이름의 인격 살해,
그 개념과 개선 방안



언론중재

2018 Autumn Vol.148

인쇄

2018년 9월 27일

발행

2018년 9월 30일

등록

1981년 10월 14일

등록번호

서울중.바 00002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권오근

발행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397-3114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편집위원

민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윤성욱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성규 미디어티 미디어테크랩장

* 본지는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FOCUS ON MEDIA

통일언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제언

1. 북한 보도의 익명성 문제: 실태와 대안 04
- 신석호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

2. 한반도 안보 특성과 '알 권리' 18
-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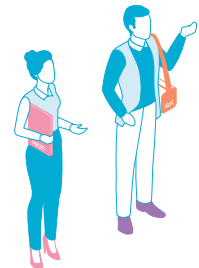
3. 분단 저널리즘을 넘어서: 32
독일 통일보도의 시사점
-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특별기고

남북 신뢰 제고를 위한 48
공동 언론중재기구 구축의 필요성
- 변상욱 CBS 대기자

6·13 지방선거 이후

제7회 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58
심의사례 분석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기사를 위한 제언
- 김민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칼럼

모노클의 성공과 반스앤노블의 추락

- 손관승 전 언론중재위원

70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모바일, 수백년 중국인들의
뉴스 소비 습관을 송두리째 바꾸다

- 이승환 블록체인미디어 코인니스 CEO

74

사건 속 법률

디지털 성범죄라는 이름의 인격 살해,
그 개념과 개선 방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중심으로

- 김슬기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82

판례토크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에게 은밀하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때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90

Journalism & Ethics

기사가, 광고인가?

위장된 광고성 기사의 윤리적 문제

- 임영호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94

해외통신원

보안되지 않은 무선 랜을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접속 제공자의 책임

- 심나리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 박사과정

98



01

북한 보도의 익명성 문제: 실태와 대안

신석호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



1. 익명 취재원의 폐해

“실명으로 등장하는 당연한 취재원이야 말로 저널리즘이 만들어 내는 요리(기사)에 꼭 필요한 헤크셔 증명서다.”¹⁾

“어쨌거나 내 말은 간단하다. 모든 취재원을 반드시 실명 처리한다는 큰 원칙을 세우라는 것이다. 그 경우 이런저런 실수나 윤리적인 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²⁾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 출신으로 컬럼비아 저널리즘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새뮤얼 프리드먼은 2006년 저서 ‘미래의 저널리스트들에게’를 통해 실명 취재원의 가치를 이렇게 비유했다.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말하는 실명 취재원이야말로 독자들에게 대한 기사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취재원을 밝힐 경우 경쟁 매체들이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보도를 하기도 쉬워 결과적으로 기사 자체의 사회적 반향을 크게 해준다. 익명에 숨은 취재원들이 사익과 편견을 섞어 넣은 가짜 정보 속에서 기자 스스로를 지킬 가장 분명한 방법이 ‘취재원 공개’이기도 하다. 두 명의 실명을 등장시킨 필자의 기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기사 1) “北대남조직 수장들 어디로?” (동아일보 2008년 9월 30일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 이상으로 8월 14일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내 대남사업 조직 수장들도 오랫동안 근황이 알려지지 않아 주목된다.

29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임명된 뒤 10·4 남북정상선언 전후로 활발하게 활동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올해 6월 18일 김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을 면담할 때 배석한 이후 언론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김 부장과 함께 중요 대남사업 부서장인 오극렬 작전부장도 같은 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의 당 사업 개시 44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에 얼굴을 드러낸 것이 공개 활동의 마지막이다.

통전부는 대남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두뇌’이자 ‘얼굴’이며 작전부는 미리 구축해 둔 루트와 조직원들을 통해 간첩을 남파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인 신분으로 남파될 간첩을 선발해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35호실’ 실장 자리는 오랫동안 공석으로 비워져 왔으며 실장 대행도 불분명한 상태다.

1) Samuel G. Freedman (2006). *Letters to a young journalist*. 조우석 (역) (2008). <미래의 저널리스트에게>. 서울: 미래인. 164. “헤크셔 증명서란 육류·채소류 등의 식품에 대해 유대인의 식품 제조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공인해주는 인가 딱지로, 기호를 붙이거나 스탬프를 찍는다.”

2) 앞의 조우석 (역) (2008). 166.

해의 거점을 통해 간접의 국적과 신분을 세탁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대외연락부의 강관주 부장은 2006년 5월 조국광복회 창건 70돌 기념 중앙보고회에 참석한 것이 확인된 뒤 모습을 나타내지 않다가 이번 9·9절 열병식에 잠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소식통인 이영화 일본 간사이(關西)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김 부장과 오 부장 등이 일제히 모습을 감춘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며 “북한이 이들 조직을 합쳐 대규모 단일조직으로 구조조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긴 김 위원장을 고려해 대남사업 지시와 보고라인을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대남 공작부서장들은 원래 잠행(潛行)이 원칙이어서 단순히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다는 것만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추측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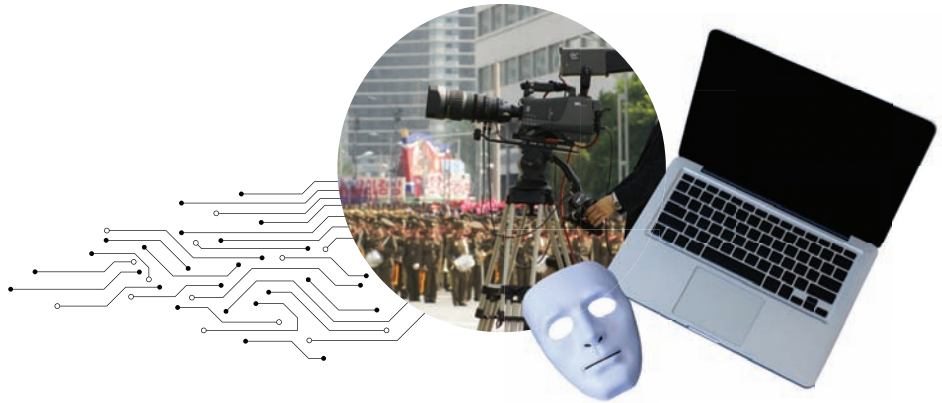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양건 부장은 남북 당국 간 대화 단절로 공개석상에 나올 일이 없었고 나머지 공작부서장은 이전에도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던 2008년 9월 9일 건국기념일 열병식에 김정은 당시 국방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아 당시 그의 건강이상설이 커지던 때였다. 핵심 취재원인 이영화 일본 간사이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한 대남 조직 수장들의 수상한 동선을 포착해 기자에게 제보하며 조직 간 통폐합 또는 구조조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도 내용은 당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다음해 5월 ‘연합뉴스’의 후속보도로 확인되었다. 북한의 단일 대남 조직 ‘정찰총국’의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한 명의 실명 취재원이 복잡한 현상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언론이 이를 단서로 추가 취재를 통해 본질을 드러내는 협업의 성과다.

<기사 2> “北 대남기구 확대개편설 잇따라” (동아일보 2009년 5월 11일자)

북한 조선노동당의 대남 공작기구들이 통합돼 국방위원회 산하로 이관됐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당 작전부(간첩 침투)와 35호실(정보수집), 대외연락부(간접 교육·파견) 등 공작기구들의 조직개편 움직임은 이미 지난해부터 감지됐다. 특히 올해 2월 오극렬 작전부장이 국방위원회에 임명된 이후 조직 통합 및 국방위 이관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10일 “북한이 노동당 35호실과 작전부를 떼어내 국방위원회 산하 인민무력부의 정찰국과 통합해 ‘정찰총국’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 언론사는 지난달 21일 “북한이 당 작전부를 인민무력부로 이관하고 35호실과 대외연락부를 국방위원회 참사가 관장토록 했다”고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앞서 대북 소식통인 이영화 일본 간사이(關西)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공작조직 수장들이 장기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며 “북한이 대남 공작조직을 합쳐 대규모 단일조직으로 구조조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본보 2008년 9월 30일자 A2면 참조

이에 대해 **정보 당국자**는 10일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국방위를 확대 강화했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남 공세의 주도권을 노동당이 아닌 군부가 행사해 왔다는 점에 비춰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 지도부가 이전 대남 공작업무를 노동당의 ‘정치’ 영역이 아닌 군부의 ‘작전’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북한은 남한의 햇볕정책이 계속되던 지난 10년 동안에는 대남 정치협상에 주력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한 내 혁명역량 강화’를 군사작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기사에서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이 글이 말하려고 하는 북한 관련 보도에서는 첫 보도에서부터 각종 다양한 익명의 취재원들이 등장한다. ‘익명의 대북 소식통’, ‘정부 고위 관계자’, ‘정보 당국자’ 등이 그것이다. 익명의 취재원들이 결과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실명 취재원을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 기자와 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더 하락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더 쉽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오보다. 필자는 2012년 펴낸 ‘분단 저널리즘 뛰어넘기’ 서문에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남한에서 생산되는 북한 및 남북관계 보도가 서구 저널리즘 원칙을 일탈하는 현상’을 ‘분단 저널리즘’으로 정의했다. 북한과 남북관계를 다루는 남한 기자들이 공정성과 정확성, 객관성, 취재

원 공개, 전문가 인용의 적정성 등 서구 저널리즘이 구축한 원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 나타나는 언론보도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직접 썼던 기사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몇 가지 사례를 고백했는데, 거의 모든 경우가 익명 취재원이었다.³⁾

분단 저널리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남한의 거의 모든 언론과 현장의 동료 기자들이 경험한 것이겠으나 이 글에서는 필자의 기사를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한다.

우선 기자나 당국자, 전문가들의 ‘희망적 사고’가 반영된, 결과적으로 틀린 전망 기사다. 김정은 후계구도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기사와 마찬가지로 그의 등장과 함께 북한이 중국식의 과감한 개혁과 개방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 기사(동아일보 2010년 7월 5일자)도 현재로서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 기대와 달리 북한은 여전히 낮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무질서한 동거 속에 대외 고립정책을 유지하며 부분적인 뽕질식 개선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보도되고, 보도 후에도 영원히 확인되지 않는 기사도 적지 않다. 일본 아사히신문과 익명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여름 개성에서 세 차례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기사(동아일보 2010년 9월 13일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신병치료차 중국을 방문했다”고 보도한 기사(동아일보 2010년 7월 12일자) 역시 이 글을 쓰는 현재까지 미확인 상태다.

국내 유명 대북 소식지를 인용해 “김정은 생일선물 실은 열차 탈선했다”고 쓴 기사(동아일보 2010년 12월 28일자)는 현재까지 반만 확인된 상태다.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대북 정보 당국자들은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가던 열차가 전복된 것은 위성사진으로 확인되지만



3) 신석호 (2012). <분단 저널리즘 뛰어넘기> 서울: 리북, 11-12.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아예 오보로 판명난 기사도 적지 않다. 대북 소식지를 인용해 “북한지도부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책임자인 김영철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의 경질을 검토하고 있다”고 쓴 기사(동아일보 2010년 9월 17일자)가 좋은 사례다. 기사를 비롯기라도 하듯 김영철은 열하루 뒤인 지난해 9월 28일 당 대표자회에서 3대 세습 후계자 김정은 옆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공개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익명 취재원들의 폐해는 단순히 기사의 부정확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비록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제보의 시기 등에 따라서 취재원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기사가 되기도 한다. 팩트를 내세운, 나아가 팩트를 가장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가 정확함과 객관성, 공정함을 내세우는 저널리즘의 외피를 쓰고 대중 속으로 파고든다는 점에서 사회적 부작용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프리드먼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3년에 벌어진 ‘월슨-노박 논쟁사건’을 예로 들며 아래와 같이 익명의 당국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저널리즘을 통해 실현할 위험에 대해 말했다.⁴⁾

“그것은 월슨처럼 정부를 비판할 의도를 갖고 있는 정부 내 고위 인사들에게 보내는 암묵적인 경고였다. 즉 익명을 요구하는 취재원들이 저널리스트를 이용해 자기 메시지를 전하면서 상대에게 겁을 주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프리드먼은 이어 연방대법원에서 위 사건의 익명 취재원인 루이스 비니(딕 체니 부통령의 전직 비서실장)의 신원 공개를 거부했다가 법정모독죄로 85일 동안 구속됐던 뉴욕타임스 주디스 밀러 기자의 사건, ‘USA투데이’의 중군기자 잭 켈리의 사례를 차례로 들면서 익명 취재원의 부작용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⁵⁾

“얼굴 없는 취재원들은 정확하지 않은 팩트, 애매한 정보, 심지어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는 발언이 보도된 이후에도 대체로 이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걸 보도한 기자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익명의 취재원 입에만 의존해 기사를 작성할 경우 기사를 멋대로 조작하려는 충동을 품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한국에서는 2012년 대선 전 MBC의 ‘안철수 후보 논문 표절’ 의혹 보도가 문제를 낳았다. 대선을 두 달여 앞둔 10월 1일부터 나온 세 차례 보도는 익명의 취재원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미디어오늘이 전한 2018년 MBC정상화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담당 기자는 2012년

4) 앞의 조우석 (역) (2008), 158-159. 전직 외교관 조지프 월슨이 이라크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의혹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뉴욕타임스에 쓰자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이 익명의 취재원을 들어 월슨의 부인이 중앙정보국(CIA) 첩보요원이라고 공격한 사건을 말한다.

5) 앞의 조우석 (역) (2008), 165.

9월 말 국회 복도에서 우연히 지인 소개로 취재원을 만나 표절 의혹이 정리된 문건을 받았지만 취재원 이름과 소속을 기억하지 못했고 취재원을 소개해준 지인은 사망했다. 논문 표절 의혹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발언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반대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배제되었다는 것이 정상화위원회의 결론이라고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정상화위원 측은 해당 보도가 △ 제보에 대한 검증 부재 △ 사실 확인의 오류 △ 공정성 외면 △ 취재원 보호 오용 △ 검증 방식 오류 등 MBC 방송강령 및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밝혔다.⁶⁾

2. 국내 북한·국방·외교·통일 관련 보도 분쟁에서 익명성 문제

그렇다면 한국의 북한·국방·외교·통일 관련 보도에서 익명 취재원의 문제는 실제로 얼마나 법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을까.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과 함께 2014년~2018년 6월, 총 4년 6개월치 언론조정·중재 사건기록을 조사한 결과 익명 취재원이 등장하는 기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북한·국방·외교·통일 등과 관련된 조정 또는 중재 사건은 사건 기준(한 사건에 대해 여러 건의 신청이 들어온 경우 한 건으로 처리)으로 모두 42건이었다.⁷⁾ 이 가운데 17건(40.5%) 기사에 익명의 취재원이 등장했다.⁸⁾

〈표 1〉 2014년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북한·국방·외교·통일 관련 조정·중재 사건

연도(년)	2014	2015	2016	2017	2018(6월)	총계
사건 수(건)	1	18	11	5	7	42
익명 취재원 등장 기사(건)	0	9	4	2	2	17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

‘청와대가 국책연구기관을 압박해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이 사퇴하고 있으며 북한 김영철이 방한했을 때 국책방송사 등에 천안함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취지의 2018년 4월 4일자 중앙일보 기사에는 모두 4명의 취재원이 인용 형태로 소개되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실명이고 2명은 익명이다. ‘세종’ 연구소 핵심 관계자와 ‘북한연구소’의 한 관계자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중앙일보와 조인스닷컴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했지만 중앙일보는 보도가 진실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조

6) 노지민 (2018, 4, 18). MBC ‘안철수 논문 표절’ 보도는 오보가 아닌 조작. 〈미디어오늘〉. URL: <https://goo.gl/AsWN2z>

7)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이 2014년~2018년 6월, 4년 6개월치 사건기록부에서 북한·국방·외교·통일 등과 관련된 조정·중재 사건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기획주제와 연관성이 적은 군 내부 범죄, 입찰 비리 및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탈북자 및 탈북단체 관련 사건은 제외함. 〈표 1〉에 포함된 사건 모두 조정 사건임(해당 분야 관련 중재 사건은 없었음).

8) 물론 모든 사건의 분쟁 원인이 익명 취재원의 발언인 것은 아니다.



정은 불성립됐다.

한편 통일부가 '100분 토론' 프로그램에 '남북정상회담 자문단'을 출연시켜 달라고 MBC에 요청하면서 사실상 '화이트리스트'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에 대한 통일부의 조정신청은 받아들여졌다. 이 보도는 '소식통에 따르면'이라는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관련 보도를 했다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기사를 일부 수정하면서 통일부의 반론을 게재했다.

하지만 익명의 취재원을 이용했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언론사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개개 사안별로 익명 취재원 인용의 진정성 여부를 따져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핵심 소스가 익명이냐 실명이냐에 관계없이 그 발언의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묻고, 사실이 아니더라도 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가려서 판결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국가정보원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 대해 2010년 10월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⁹⁾ 중앙일보는 2009년 3월 21일자 1면에 '원세훈 국정원장 방미...패네타 CIA국장을 만나다'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익명의 워싱턴 정보 소식통을 인용했다. 국정원은 기사 내용 중 "원 원장은 '북한이 설사 광명성 2호라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한국은 그걸 군사적 목적 미사일 개발실험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는 등 소식통의 전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에 따라 "보도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중앙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법

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4. 선고 2009가합37997 판결.

원은 또 국정원 측이 중앙일보의 보도 과정에서 시기를 늦춰준 것에 대해 감사표시까지 하고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3. 북한 담당 기자는 왜 익명 보도를 하는가?

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취재원이 익명 또는 실명인가’보다는 ‘해당 보도가 진실인가’에 더 큰 사회적 법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 관련 보도에 있어서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들은 국가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익명 취재원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선 취재 현장에서도 바로 그런 논리로 익명 취재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2000년 가을 금강산 방문을 시작으로 모두 아홉 차례 방북 취재를 하는 등 18년째 북한 보도를 해오는 동안 다양한 형태로 익명 취재원을 활용했다. 이 글을 계기로 실제 북한 관련 기사에 왜 익명 취재원을 등장시키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을 유형화 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유형별 단독 보도를 사례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 실명이 드러날 경우 취재원의 직위가 유지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자가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추적취재했던 이명박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무산 과정 집중보도는 아래 <기사 3>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북한 조문단 방남으로 시작된 남북대화의 흐름은 그해 가을 임태희 당시 노동부장관과 북한 김양건의 싱가포르 비밀접촉으로 급물살을 탄다. 하지만 남한의 통일부와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나선 개성 당국 간 회담에서 정상회담 개최 협상이 결렬되고 만다. 필자는 아래 보도에서 정상회담 논의의 부침을 전한 뒤, 2010년 8월 시리즈 보도를 통해 그 과정에 이명박 정부 핵심 측근들 사이에 대북정책을 놓고 원칙파와 대화파라는 근본적인 노선 투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일련의 취재 과정에서 아래 기사에 등장하는 ‘대북 소식통’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지금도 필자는 취재원을 엄격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다. 당시 보도에 그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그의 지위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넣었다면 아마도 그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을 것이고 필자는 진실을 추적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이 글을 통해 설명한다면 그가 익명으로나마 밝히고 싶었던 것은 북한이라는 상대방이 있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기사 3〉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 비밀접촉” (동아일보 2009년 12월 21일자)

정부가 올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놓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이끄는 비선(秘線)에 이어 통일부가 주도하는 당국 간 라인을 가동해 북한과 접촉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정부는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해야 한다는 요구를 양보하는 대신 평양 등 북측 지역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국군포로와 남북자 일부를 영구 귀환 또는 일시적으로 남측을 방문할 수 있도록 데리고 돌아오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종 협상 과정에서 북측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2) 실명이 드러날 경우 취재원의 방북(북한과의 관계)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장 최근인 2018년 2월 보도한 〈기사 4〉는 칼럼이다. 북한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자기의 분신인 동생 김여정을 보내는 것은 남북대화를 넘어 북미대화가 시작되는 징후라는 강력한 주장을 담았다.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진 이 칼럼의 핵심 콘텐츠는 ‘최근 제3국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난 한 대북 소식통이다. 북한이 이미 2017년 하반기부터 제재를 벗어나기 위한 평화국면을 준비해왔다는 전언이었다. 칼럼이 현실화되면서 익명 취재원의 신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다. 그는 아직도 북한과의 사업을 위해 제3국에서 접촉을 하고 있고, 실명이 공개될 경우 사업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 4〉 “평창은 시작일 뿐이다” (동아일보 2018년 2월 10일자)

최근 제3국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난 한 대북 소식통의 전언은 다소나마 희망을 갖게 한다. 지난해 말 평양에서는 향후 대외관계 전략과 관련해 논쟁이 있었고 지금의 제재 하에서는 경제가 1년도 못 버틸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북한 최고지도부도 핵 문제를 이대로 계속 가지고 갈 수 없으며 미국과의 대화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신년사 이후 김정은은 남한의 마음을 얻고 대외적으로 평화 이미지를 심는 데 자신의 정치적 자원을 그야말로 ‘통 크게’ 쏟아붓고 있다. 서해 직항로를 날아 대한민국의 대문인 인천공항에 내린 전용기에 PRK-615라는 편명을 달아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 준수를 강조했다. 전날 평양에서 열린 건군절 열병식에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지 않고 생중계도 포기하는 등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8일 한국에 도착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등이 연일 대북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도 물밑으로 전해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읽었기 때문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해 '고분고분한 북한'이 필요하다. '미국 보수 강경파'들의 반발을 달래며 북한과 대화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몰아붙이니까 북한이 나왔다'는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

3) 실명이 드러날 경우 추가 취재가 어려워질 것을 기자 스스로 우려하는 경우

아래 <기사 5>에 등장하는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민간인으로 2009년 가을 평양을 방문해 원동연이 통전부 부부장으로 승진했다는 따끈따끈한 뉴스를 필자에게 전해줬다. 그는 그것을 보도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자신이 평양을 방문해 들었다는 내용도 써도 좋다고 했다. 자신이 한국에서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이 알아도 좋다는 뜻이었다. 한국 정부가 알아도 상관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취재원은 당국에 이미 이같은 정보를 전해 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실명을 써도 될까? 아니었다. 취재원은 자신의 방북 사실과 이름이 다른 언론과 대중에게 알려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기사 5> “北 원동연, 대남사업 2인자로” (동아일보 2009년 11월 21일자)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을 맡았던 원동연 씨(62·사진)가 지난달 대남사업 실무 책임자인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및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으로 승진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비밀 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원 씨는 올해 8월 21~23일 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북한 조문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했으며 지난달 15~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남북간 비밀접촉에 김양건 노동당 통전부장과 함께 북측 대표로 참가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최근 평양을 방문해 원 씨의 승진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대화 의지에 북측이 나름의 반응을 보이는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래 <기사 6>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사에 등장하는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당국자였고 추측만 무성하던 김정은(당시 이름은 김정운)의 후계자 지명을 사실상 확인해 주는 두 가지 팩트를 제공했다. 하나는 평양의 노동당이 해외 공관에 김정은 후계자 지명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고, 북한 내부 주민들을 상대로 '발걸음이라는 찬양 노래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취재원은 김정은의 후계자 지명이 확인된 마당에 더 이상의 추측이나 논란은 소모적이라고 판단해 필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본인의 실명이 드러나는 것은 반대했다.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5월 23일)하고 북한이 2차 핵실험(5월 25일)을 단행한 직후였다. 민감한 시점에 파급력이 큰 북한 관련 뉴스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그 이후에도 필자의 중요한 취재원이었다. 필자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사 6> 「北 '김정운이 후계' 5월 28일 해외공관 통보」 (동아일보 2009년 6월 2일자)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을 최고지도자로 3남 김정운(26)을 지명하고 이를 2차 핵실험(지난달 25일) 직후 전 세계 해외 공관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동안 노동당과 인민군, 내각 등에도 내밀하게 이 같은 사실을 전파해 온 북한 지도부가 사실상 대외적으로도 '3대 세습'을 위한 후계자 지명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 김정은 후계 체제를 굳건히 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통한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8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해외 공관장들에게 '김정은 후계자 내정' 사실을 전파했다. 또 북한은 일반 주민들에게 새 지도자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노래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도 북한의 후계자 내정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종합적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해외 공관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한 사실이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북한이 3남 김정운의 후계자 지명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 지도부가 군과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 주요 체제보위기관 간부들을 대상으로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사상학습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본보가 단독 입수한 북한의 노래 '발걸음은 김 위원장의 후계자를 칭송하는 내용으로, 가사에는 '2월의 위업 받들어'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 등 후계자의 등장을 예고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노래는 김정운을 '김 대장'으로 부르며 '2월의 위업, 기상, 정기' 등을 강조해 1942년 2월 16일 태어난 김 위원장의 후계자임을 분명히 했다.

4.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글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과 중재 사건 가운데 북한·국방·외교·통일 등과 관련된 보도를 추려보고, 특히 취재원 익명성의 문제를 다뤄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추구해 보았다. 비록 2014년 이후 4년 6개월 기간 동안이지만 사건의 상당부분에 익명 취재원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익명 취재원의 발언 내용이 분쟁의 핵심적인 원인인 경

우는 아직 많지 않았다.

조정·중재 사건에 더해 언론 관련 판결도 찾아보는 과정에서 비록 하나의 판결이긴 했지만 법원이 취재원의 익명성보다는 기사 전체의 진실성에 따라 판결을 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법의 관점에서 볼 때, 취재원의 익명성보다 기사의 진실성이 판결의 중요한 기준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조사결과가 무차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취재원의 익명성에 100% 면죄부를 주지는 않는다. 특히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볼 때 익명 취재원은 취재보도의 용이성을 위해 기사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린다는 점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서구 저널리즘은 이와 관련해 다양한 처방책을 내놓고 있다.

앞서 소개한 프리드먼은 “익명의 제보자를 무조건 거부하라는 충고가 아니다. 활용을 하려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분별력 있게, 적절한 검증을 거쳐 하라는 이야기”라며 몇 가지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스스로 기준을 세우 과연 어떤 상황에서 오프더레코드(익명 보도 포함)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저 취재원이 털어놓는 말은 정말 중요한 것인가? 그 사안과 관련해 정말 많은 정보를 쥐고 있는가? 그걸 아는 이가 저 사람 말고는 과연 없는 것일까? 저 사람의 정보 말고 제3의 공식·비공식 기록이나 정보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런 주도면밀한 파악 아래 취재원의 익명 요구를 딱 부러지게 거절한 채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해야 한다고 밝힐 경우 의외로 취재원의 반응이 달라진다.’¹⁰⁾

이어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기자의 워터게이트 탐사보도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익명의 제보자(딥 스로트)의 말을 직접 인용하기보다는 ‘점검을 위한 도구’ 또는 ‘별도의 취재를 통해 확보한 정보나 의문점을 대조해보며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¹¹⁾

“한 취재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정보를 들은 경우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의견과 정보는 물론 편견과 고정관념까지 접수하게 된다. 걸러내는 작업은 그 다음이다. 문제는 그가 익명을 요구하는 제보자일 경우인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점검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를 통해 당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팩트를 한번 점검해보고 처음에 잡은 방향이 과연 맞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자료 문치를 일괄로 넘겨받기도 하는데 그게 좋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주장을 인용하기보다는 그걸 증명하는 물증을 넘겨받아 자체 점검을 해보는 것이다.”

뉴욕타임스의 편집인 조 렐리벨드는 기자와 부장들에게 익명의 취재원을 사용하기 전에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요구했다.¹²⁾

“첫째, 익명의 취재원은 그 사건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둘째, 만약 있다면



10) 앞의 조우석 (역) (2008), 162.

11) 앞의 조우석 (역) (2008), 160-161.


취재원이 우리를 오도하고 사족을 붙이거나 정보에 대한 우리의 인상을 바꾸어놓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동기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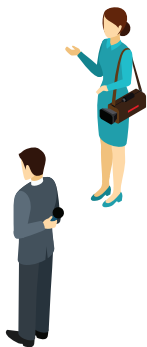
뉴하우스 신문사의 워싱턴 지국장 데이버러 하월은 렐리벨드의 규칙을 보장하는 익명의 취재원에 대한 두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¹³⁾

“첫째,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익명의 취재원을 결코 사용하지 말라. 둘째, 기사 속의 첫 번째 인용으로 익명의 취재원을 사용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콘라드 핑크는 익명 취재원이라도 가급적 자세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지적한다.¹⁴⁾

“익명의 취재원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를 기자 자신의 정보로서 활용하도록 고집한다. 그래도 정통한 소식통이라는 표현은 소스를 밝히지 못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고 할 수 있다. ‘정부 고위 관리’라는 표현 정도만 되어도 그보다는 더 낫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통령 측근 고위 보좌관’이란 표현은 취재원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비록 아직 한국의 북한 보도가 모든 처방책을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위에서 제시한 서구 저널리즘의 충고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 첫째, 익명의 취재원에게서 정보를 들은 뒤 이것을 다른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반드시 확인한다. 둘째, 익명을 요구하는 취재원이 말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를 실명으로 말해 줄 취재원을 찾아본다. 셋째, 기사의 핵심 내용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복수의 인용을 한다. 넷째, 불가피하게 익명의 취재원의 발언 형태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를 첫 인용으로 하지 않는다. 첫 인용은 가급적 실명 취재원으로 한다. 다섯째,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가급적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준다. 예를 들어 ‘한 대북 소식통’ 같은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이 문제에 정통한 정부 당국자’ 등의 정보를 담아준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현장 기자들이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들의 기자와 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12) Bill Kovach & Tom Rosenstiel (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1st ed.), 이재경 (역) (2003), <저널리즘의 기본요소>,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131.

13) 앞의 이재경 (역) (2003), 132.

14) Fink, Conrad C. (1988), *Media ethics*, 한국언론연구원 (역) (1995), <언론윤리>,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77.

02

한반도 안보 특성과 '알 권리'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1. 서론

민주주의가 인간 사회 핵심 가치로 떠오른 이후, 국가 안보와 알 권리는 모순 관계를 보여 왔고, 흥미로운 토론 주제로 거론돼 왔다. 미국의 경우 알 권리 논란은 영화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2017년 개봉된 미국 영화 ‘더 포스트(The Post)’는 국가 안보와 알 권리 충돌 문제를 극적으로 표현한 사례다. 1971년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여론 조작을 시도한 증거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야기의 출발점이다. 문제의 비밀 자료를 만든 사람이 정부 행태에 불만을 품고, 자료 공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백악관과 국방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진행한 법적, 사회적 논쟁을 긴장과 스펀이 넘치는 영화로 만들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 소유자 캐서린 그레이엄(Katharine Graham)은 문제의 보도를 강행할 경우 광고 수입이 줄거나 자신의 사회적 기반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좋은 언론은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해당 보도를 결정했다. 그레이엄 회장의 결정은 미국 언론 역사에서 알 권리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앞서 2005년에 개봉된 미국 영화 ‘굿 나잇, 앤 굿 럭(Good night and good luck)’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가 안보와 알 권리 사이에서 고민하는 미국 사회의 역동성을 인상적으로 표현했다. 이 영화는 1954년 당시 미국 사회에 광풍을 몰고 온 이른바 매카시즘과 맞서 싸우는 언론인의 용기와 고뇌를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은 CBS 텔레비전 뉴스 진행자 에드워드 머로우(Edward R. Murrow)로 공산주의자 색출 운동을 주도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상원의원 조지프 매카시(Joseph McCarthy)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탐사 프로그램을 내보낸다.

2003년 뉴욕 타임스 주디스 밀러(Judith Miller) 기자 사건도 국가 안보와 알 권리 논란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당시 미 행정부, 특히 백악관 고위 관리 일부는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사칭해 여론 조작에 나섰다. 밀러 기자는 이들이 건네주는 거짓 정보를 특종이라고 주장하면서 뉴욕타임스 지면에 올렸다. 밀러 기자는 나중에 자신의 보도가 오보로 확인된 이후 자신은 해당 정보가 사실이라고 믿었다면서 알 권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변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 폭로 사건도 알 권리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면서 세계 언론을 뜨겁게 달궜다. 당시 미 중앙정보국 CIA 용역원이었던 스노든은 자신이 경험한 국가 정보 기관의 민간인 사찰 관행을 언론에 제보했다. 스노든은 민주주의를 보호한 영웅이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나라의 배신자라는 악명도 동시에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안보와 알 권리는 모순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두 개념이 충돌하는 양상은 미국과 상당히 다르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형 오보 사건이 가끔씩 나왔고, 무기 도입 사업과 관련한 군 고위 간부들의 부정부패 문제, 또는 장병 의사사 사건과 관련

한 폭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사로 국가 안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사건에 가깝다는 특징을 보인다. 우리 정부가 진행하는 중대한 국가 기밀을 폭로하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그래서 알 권리 논란이 제기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안보와 알 권리의 직접 충돌 사례가 자주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 안보 당국의 완벽한 일처리 때문은 아닐 것이다. 우리 언론이 국가 정책에 완벽하게 협력하기 때문도 아닐 것이다. 오히려 한반도 안보 특성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한 변수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국제 사회에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국가 안보 개념과 제도, 관행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언론이 특정 정보의 공개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강대국 반열과 거리가 있는 중견국가이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비교하면 오히려 약소국 취급을 받아왔다. 그런 가운데 북한과 적대적 분단 구조의 한 축이고, 미국과 군사 동맹을 체결하고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양도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국가 안보와 알 권리의 충돌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간접적인 방식, 즉 국가 안보와 관련한 부차적인 요소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런 상황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알 권리 논의에서 국제 사회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한반도 상황에서 발생한 독특한 현상에도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한반도 안보 특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알 권리 논란과 관련해 더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방법도 발견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2. 한반도 안보 구조 특성..분단, 동맹, 정치쟁점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같은 민족인 한국과 북한이 명백한 적국이고, 이로 인해 적대적 분단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적대적 분단 구조는 ‘분단’과 ‘적대적 관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만약 북한이 동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나라였다면 분단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북한과 한국은 원래 하나의 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분단에 따른 사회적 특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양측의 주도권 경쟁이 나타난다. 한편 분단이 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적대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적대 관계는 중요한 특징이다. 동족의 나라가 분단된다고 해도 평화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같은 언어와 문화를 향유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나라로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적대적 분단 구조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재확인, 또는 확산 노력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만들어낸다. 남한에서 북한에 대해, 특히 집권 세력인 김일성 일가에 대해 우호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금기에 해당하고, 법으로도 금지돼 있다.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를 공식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 보안법에 대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부 존재하지만, 이는 국가 보안법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남북 간 적대 관계를 부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적대적 분단 구조는 국가 안보 개념 범위를 축소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이고 패권 국가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 개념은 전세계를 무대로 하고,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목표에 집중하게 된다. 미국이 아니더라도 보통 나라는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적대감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둔감하게 여기고, 오직 북한과의 적대 관계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대응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

는 것과 특정 국가와의 갈등 관리에만 집중하는 것은 국가 안보 전략 마련 차원에서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 획일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쪽 언론인 중에 북한에 관한 한 우호적으로 묘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도 상상하기 어렵다. 북한이 적국이란 인식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고, 북한 침공으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조건에서, 북한에 대해 우호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가끔씩 북한을 찬양하는 논평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현상은 극히 예외적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것이 애국심을 표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정부 당국이 대북 적대감을 의도적으로 확산하는 경우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 기밀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문건을 폭로하는 노력은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적대적 분단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 개념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흐름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의 존재 자체를 국가 안보에 위협 요소로 규정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한미 동맹이라는 요소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더욱 독특한 양상을 만들어낸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는 스스로 국가 안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상당수 국가는 가상 적국과의 군사력 차이를 고려해 스스로 국가 안보를 해결하기보다는 동맹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보 문제에 대응한다. 특히 약소국의 경우는 강대국의 보호를 받는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는 나토(NATO), 즉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회원이 되는 것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한다. 소련의 군사적 침공 가능성에 맞서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군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이 나토 회원국 참가 유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냉전 종식 이후에도 나토는 특정 불량 국가(Rogue state)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에 대한 대책으로 존재하고 있다. 중동 지역 국가들의 경우도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면서 군사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슬람권 내부에서는 수니파 국가들과 시아파 국가들이 별도의 협력 관계를 맺고 국가 안보를 해결한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세계적 차원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동맹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 국가를 만들어서 군사적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미국도 동맹의 도움을 활용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동맹에 대한 의존, 나아가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또 다른 특징으로 진영 투쟁을 들 수 있다. 동족 국가인 북한과 적대적 분단 구조를 형성하고, 한미 동맹을 국가 안보의 근간으로 삼게 되면서 한국 사회는



안보 문제를 빌미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정치 투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된다. 보수 진영은 우리나라 안보 문제에서 근본적 모순을 북한 김일성 가문의 존재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한반도 안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북한을 굴복시키고 남북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보수 진영의 시각에서 보면 국가 안보의 근간은 한미 동맹에 있다. 그러므로 안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미 동맹을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을 북한이 굴복하는 순간까지 진행하는 것이다. 진보 진영은 우리나라 안보 문제의 근본적 모순이 분단 자체에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므로 분단을 해결하는 것이 중대한 안보 문제를 해소하는 첩경으로 인식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을 이루고 점진적 화해 과정을 거쳐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접근법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제재 일변도' 정책은 북한을 굴복시키지도 못하면서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손실만 키우는 하책 중에 하책이다. 문제는 어느 쪽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서로 상대방 진영이 이적 행위, 또는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서 진영 논리에 충실한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알 권리 논란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어렵다.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 현실에서 보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이 드러난다고 해도 진영 논리에 의거한 편향적 태도는 달라지지 않는다. 알 권리를 바탕으로 새롭게 드러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은 단지 자기 진영의 논리를 강조하는 데 활용될 뿐이다.



3. 적대적 분단 구조...성역의 뿌리

적대적 분단 구조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을 중대 변수로 만든다. 한편에서는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을 약화하는 보도를 이적 행위로 규정하는 세력이 있다. 정반대로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을 과장하는 것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알 권리를 주제로 건전한 토론은 어렵다. 알 권리에 집중한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을 중시한다는 뜻이지만, 북한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회적 통념이 형성돼 있다면 알 권리보다는 의견과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접근법에서 본다면 2013년 현송월 총살 오보는 한국 사회에서 알 권리에 대한 논란이 얼마나 왜곡된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잘 보여준다.

현송월은 북한의 유명 가수로 북한의 국가급 관현악단인 은하수 관현악단의 주요 구성원이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옛 애인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2013년 8월 그런 현송월이 갑자기 총살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송월이 음란 비디오 촬영 작업에 참여한 것이 발각돼 총살됐다는 것이다. 당시 보도 초점은 북한의 최고 유명 가수도 음란 비디오 촬영 작업에 참여할 정도로 북한의 경제 상황은 파탄 상태에 있고, 북한 내 사회 질서도 망가졌다는 점, 김정은이 과거 애인인 현송월을 처형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보도로 해석됐다. 그런데 총살됐다는 현송월이 2015년 12월 또 다른 국가급 악단인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후 2018년 2월 남북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북한 예술단 단장 자격으로 서울에 나타나 총살설을 보도했던 언론사를 참담한 지경에 몰아넣었다. 그렇지만, 해당 언론사는 정정 기사

를 실은 적도 없고, 사과하는 입장을 밝힌 적도 없다. 북한 정권의 잔혹성이나 사악함을 고발하는 뉴스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비밀 정보를 다루는 만큼 어느 정도 오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논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명백하게 오보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과나 반성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비난을 자초할 뿐이다. 해당 보도를 제시한 언론사도 문제지만, 이후 해당 보도를 근거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쓴 다른 언론사들도 저급한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 알 권리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할 분위기가 전혀 아닌 것이다.

2016년 4월에 있었던 중국 류경 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은 현송월 총살 오보 못지 않게 중요한 사건이다. 당시 상황을 날짜별로 살펴보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다. 4월 5일, 식당 지배인 허강일 지시로 종업원들이 단체로 식당을 탈출해 말레이시아로 이동한다. 4월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간다. 4월 7일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허강일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4월 8일 통일부 대변인이 식당 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을 했다고 공개한다. 4월 13일 제20대 총선이 실시된다. 과거 있었던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졌다. 4월 5일 밤 중국 저장성 닝보의 식당 숙소에서 탈출을 시작했는데 다음날 말레이시아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사전에 우리 정부 정보 당국과 긴밀한 협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입국했다는 사실을 통일부가 하루 만에 발표했다라는 점이다. 통일부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해도 북쪽에 남은 가족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관련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정보 상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황당한 일일 뿐이다. 이는 정치적인 고려가 배후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4월 8일 통일부 발표 이후 5일 뒤인 13일에 제20대 총선거가 실시됐다. 종업원들의 탈출 과정과 입국 과정, 발표 과정을 보면 4월 13일 총선 날짜를 의식해서 서둘렀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2018년 5월 JTBC 방송을 보면 지배인 허강일은 국가 정보원 현지 파견 요원의 요구에 따라 집단 탈북을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허강일은 인터뷰에서 당초 북한을 압박하는 작업 차원에서 집단 탈북 기획에 동조했지만, 한국의 총선에 활용하기 위한 공작에 활용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류경 식당 사건과 같은 시기에 있었던 북한 정찰총국 대좌 망명 사실 발표 역시 정부 당국이 북한 문제, 또는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제20대 총선에 활용한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2016년 4월 11일 오전 연합뉴스가 북한 정찰총국 대좌 망명 사실을 특종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이 그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 보도는 어느 정도 주목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반드시 정부가 공개하거나 확인할 사안은 아니었다. 정부 당국은 이런 경우에 대해 '정보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복하는 것이 상식이다. 정

부가 정보 사항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식으로 언급을 해도 정보 당국의 정보 수집 능력이나 정보망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대변인의 전례 없는 발표가 총선 이틀 전이었다는 사실은 정부가 명백하게 총선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더구나 문제의 정찰총국 대좌가 실제 계급은 상좌였다거나, 소속이 정찰총국이 아니었다는 보도, 1년 전에 이미 입국해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같은 날 통일부는 다른 유사한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아프리카 한 국가에 근무하던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탈북한 뒤 입국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 문제를 주요 관심사로 떠올리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이 북한 엘리트 집단을 균열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는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남북 문제를 국내 정치 일정에 활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대북 정책의 장애물을 스스로 만드는 것으로 반국가적, 반민족적 배신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남북 적대적 분단 구조 속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를 재확인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도 정당화된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라서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증언이나 행사는 시시비비 대상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공유하기 위한 집단적 의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4. 한미동맹...알 권리 토론 위축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근간이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연합 방위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국가 방위에 대한 신뢰 지수는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 운용 능력은 제약을 갖게 되고, 미군에 대한 의존성, 한미 동맹에 대한 의존성도 당연히 커진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구체적으로 발생한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서 부작용이 민감하게 노출됐다. 당시 북한은 오후 2시 34분부터 오후 3시 41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연평도를 향해 170여 발의 각종 포사격을 감행했고, 그 결과 건물 수십 동과 시설이 심대하게 부서졌고, 우리 군과 민간인 4명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자꾸포 대응 사격을 일부 했지만, 수량이 80여 발에 불과했다. 이는 응징, 보복 타격 기준으로 매우 적은 것이다. 적대적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적군이 무력 도발에 나설 경우 3배 이상의 타격에 나서는 것은 상식적인 대응이다. 또 전투기나 군함 발사 미사일 공격을 하지 않은 것은 결정적으로 무기력한 대응이라는 비난을 불렀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전투기 출격과 공습을 지시했지만,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전투기 공습은 주한 미군 사령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만큼 불가하다면서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벌어지고 난 이후 몇 주일이 지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상당한 규모의 응징, 보복 타격

을 계획했지만, 미국 정부의 강력한 만류로 서해 우리 관할 수역에서 대규모 사격 훈련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사에 해당하지만 한미동맹 유지 관리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공식 차원에서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적군 앞에서 아군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모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언론도 한미동맹을 중대하게 약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 권리를 실천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가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다. 결국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이 커져서 전반적인 국가 안보 지수는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책 결정 자율성은 위축됐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도 떨어진 상태에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제약은 대폭 증강된 상황이다.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의 근간이지만, 한국과 미국의 국익은 엄연히 다르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나라 국가 안보 담당자들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들은 한미 양국 간 국익 부문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무리하게 정책 동조화를 추진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익 차원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국가 이익 개념에 따라 한반도 정책을 전개한다. 특히 북한을 불량국가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선 합리적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증강하면서 영원히 북한의 굴복을 기다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끝없이 중요성을 확장시키고, 영원히 적대 관계를 심화시켜도, 북한이 군사적으로 미국에 치명적 위협이 되지도 않고, 북한이 어떻게 되든 남의 나라인 만큼 미국이 책임질 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약화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동쪽의 나라이고, 언젠가 통일을 이뤄서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뭉쳐야 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장기간 서로 다른 접근법을 보이면서 갈등 상황



을 경험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개성공단은 북한에 현금을 지급하는 통로가 되고, 결국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도와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단 폐쇄를 촉구했던 사례가 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이 북한이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북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공단 유지를 추진해왔다. 한국 정부 입장은 2016년 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공단 폐쇄를 결정하면서 미국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개성공단 문제는 한국이 미국과의 정책 동조화를 과도하게 추진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양국 국익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다. 이처럼 대북 정책에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알 권리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국내 언론은 한국과 미국의 정책 방향 차이가 발생할 경우 미국의 정책에 동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다수설과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소수설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이런 보도 태도는 알 권리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5. 진영 투쟁...4단계 악순환 구조

한반도 안보 환경이 적대적 분단 구조 하에서 한미동맹 중시라는 특성을 보이면서 국내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진영 투쟁 현상을 보이고, 결국 알 권리는 진영 논리에 묻히게 된다. 보수 진영의 경우 북한을 위협적인 적대 세력으로 묘사하는 것과 한미 동맹 중시 원칙을 강조하는 것을 국가 안보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진보 진영의 경우는 남북 분단 구조를 해체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는 믿음에 충실하다.

한국에서 안보 현안과 관련한 진영 논리는 4단계의 윤색 절차를 거치면서 서로의 진영에 유리한 철용성을 구축한다. 진영 논리를 가장 먼저 채택하는 집단은 정치권이다. 정치권은 자기의 소속 진영에서 채택한 논리에 따라 유권자를 상대로 유창한 대변인 역할과 매끈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한다. 2단계에서는 학자와 관료 출신 전문가들이 개입한다. 이들은 각자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국가 안보와 관련한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하면서 더욱 선명하고 명쾌하게 윤색된 진영 논리를 제공한다. 3단계 윤색 담당자는 언론인이다. 언론인들은 안보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복잡한 현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소속 진영 논리에 근거해서 언론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준다. 언론인들은 전문가들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보도와 해설을 하면서 더욱 선명하고 명쾌하게 윤색된 언어를 사용한다. 제4단계는 일반 독자와 시청자들이다. 이들은 언론이 제공하는 보도와 해설을 바탕으로 상황을 인식한다. 일반 독자와 시청자는 특히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윤색된



두 가지 보도와 해설 중에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것을 선호하고, 윤색이 부족한 평범한 보도와 해설은 외면한다. 독자와 시청자는 곧 유권자이므로 정치인들은 유권자 분포에 따라 진영 논리에 더욱 충실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 사회에서 진영 논리의 4단계 악순환은 지속되고, 한국인들은 국가 안보 현안과 관련해 정파성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알 권리는 객관적 사실이 부족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미 어떤 사실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이뤄진 조건에서는 알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 효율적인 메시지 전달, 또는 통쾌한 의사 표현이 중요할 뿐이다.

6. 한반도 안보 특성과 언론 보도 개선 방향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안보와 알 권리 논란이 존재하지만, 양상은 다르다. 한반도 안보 구조 특성은 적대적 분단 구조와 한미 동맹, 그리고 진영 투쟁이라는 특징을 만들어낸다. 안보와 알 권리가 직접 충돌하기보다는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맥락에서 알 권리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안보 현실과 안보 관련 언론 보도 관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세 가지 단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 담당자나 언론인을 상대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적대적 분단 구조 속에서 북한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나 논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북한 관련 보도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요소를 부각하는 노력이거나, 반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보도였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이런 것은 특히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강조돼야 하는 요소로 언론인 대다수가 스스로 편

향적 보도 활동을 벌여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알 권리'와 관련한 건전한 토론은 불가능하다. 편향적인 언론 활동으로 북한이나 미국과 관련해 과도하게 비뚤어진 이미지가 만들어져 수십 년 동안 이어졌고, 북한과 관련한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책 책임자들이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검토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민감하고 복잡한 정책 검토가 잘못된 지식에 기반해 이뤄진다면 효과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고, 국가 안보 상황이 악화하는 결과도 막을 수 없다.

안보와 알 권리 개선을 위해 교육이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지만, 권고에 해당한다는 한계가 있다. 2단계 대응 조치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개인 이익이나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사칭해 정보 장난을 자행하는 정책 관계자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언론인 개인 존재감 과시나 진영 투쟁에 가담한 결과로 알 권리를 사칭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언론의 경우 오보를 이유로 형사 처벌 등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경우 언론 자유를 위축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정보도를 강제하거나 안보 보도 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도 있고, 또는 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 안보나 안보와 관련한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날 경우 이를 심의하는 특별 기구를 만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나 국회 정보위원회 또는 통일외교위원회 산하에 특별 심의기구를 조직해서 여야 정치인과 학자, 법조인,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여론조작 논란이나 오보 논란을 다루면서 시사비비를 가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초당파적인 통일, 외교, 안보 정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에서 진영 투쟁이 존재하는 한 북한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오보를 유포하는 것을 애국으로 착각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다. 정반대로 대북 관여 정책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미국



에 대한 사대주의로 매도하고, 반미 행동에 나서는 것이 애국이라고 오해하는 상황도 개선되지 않는다. 외교 안보와 관련해 초당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먼저 희생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선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를 수시로 초청해서 관련 주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고, 정책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또 관련 분야 각료를 야당 지도자에 수시로 파견해 민감한 정책 진행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 정책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야당 추천 인사를 30% 정도까지 늘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김대중 대통령 집권 초기처럼, 내각 중에서 일부 장관직을 야당 진영 인사에게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들이 외교 안보 현안을 선거 등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서약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교 안보 현안은 민족과 국가 이익을 다루는 일이라는 점에서 초당적 대응을 관행으로 만들고, 여야 정치권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반도 안보 특성을 감안한 정책 관계자와 언론인 교육을 강화하고, 초당적 정책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국가 안보 개선과 알 권리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03

분단 저널리즘을 넘어서: 독일 통일보도의 시사점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1. 신뢰회복을 위한 정보교류

흔히들 디지털기술이 발달하면서 ‘탈진실시대(Post-truth 또는 Post fact)’가 도래했다고 말한다. 사실과 허위, 정확한 것과 부정확한 것이 혼재되고 정보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향이 파편적인 상황에서, 일정한 방향을 필요로 하는 정치행위와 정책추진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남·북한 관계는 동·서독 관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전쟁을 통해 극한 상황까지 경험한 한반도의 통일 과정이 독일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기 위해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할 것이다. 소통하지 않고선 서로를 이해할 수 없고, 상호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뢰를 구축하기란 어렵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주장처럼 정직은 최고의 정치(Ehrlichkeit ist die beste Politik)다. 칸트는 정치가 의견과 타협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보고, 정직만큼이나 신뢰를 쌓고 절충안을 만드는 데 도움 되는 것도 없다고 보았다(Kant, 1970). 여기서 정직을 최우선으로 한 타협과 신뢰 구축의 바탕은 ‘진실’에 근거한 정보 교류일 것이다.

분단시절 동·서독의 정보 교류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꾸준히 이루어졌다. 동독의 독일통일사회당(SED)과 정무원은 1989년 가을까지 동독 주민들에게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았다. 반면 서독 기본법(헌법) 제5조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다. 물론 동독 헌법도 1974년 10월 7일 개정을 통해 독일통일사회당(SED)의 영도적 역할 아래 인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오직 헌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았다. 이렇듯 동독 정부의 정보의 자유 보장에 대한 반대가 심했고 국토가 분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동·서독 간 지속적인 정보 교류는 있었다.

서독 정부는 1961년 연방의회에 약쉬(Jaksch)보고서를 제출하고 소련 및 동유럽 국가와 평화적 공존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동방정책(Ostpolitik)을 도입했다. 서독 정부가 동·서독 간 긴장완화를 위한 동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성과로 1970년 3월 18일 제1차 동·서독 정상회담이 동독 에어푸르트시, 1970년 5월 21일 제2차 정상회담이 서독 카셀시에서 열렸다. 동·서독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이미 동·서독 사이엔 상호 간 매체 이용이 원칙적으로 자유로웠고, 제한된 범위이지만 방송 시청도 가능했다.

2. ‘하나의 독일, 두 개의 정권’이란 인식과 통일 대비 언론정책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독일은 전승국에 의해 동·서독으로 나뉜다. 자유주의 진영이

점령한 서독은 건국 후 외교 원칙으로 할슈타인 원칙(Hallstein-Doktrin)을 채택했다. 할슈타인 원칙은 '동독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와는 수교하지 않는다'는 외교정책이다 (Meissner, 1982, 5-6). 그러나 1955년 서독이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대결보다는 공존을 선택하는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다. 1961년 독일 정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약쉬(Jaksch)보고서에 따라 서독은 소련 및 동유럽국가와 평화적 공존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동방정책(Ostpolitik)을 도입하는 기본원칙을 채택한다. 보수 정당인 기민당이 주도한 연방 정부가 제시한 약쉬보고서에 따라 동·서독 사이에는 긴장완화를 위한 협상이 꾸준히 이뤄졌다. 그 구체적인 성과가 앞서 언급한 두 차례에 걸친 동·서독 정상회담이었다.

서독은 정부 부처로 1949년 범독일문제부(Ministerium fuer gesamtdeutsche Fragen, BMG)를 설치했다. 이 부서는 제1·2차 세계대전 이후 상실했던 고토(故土)/미수복지역인 소련령 동프로이센과 폴란드령 동프로이센, 프랑스령 알사스-로렌주, 동부 벨기에 지역, 발틱해 연안의 뮐벳 지역 등의 수복을 전제로 하는 구독일제국 영토(프로이센왕국의 최소 영역)에 대한 통일을 원칙으로 했다. 그 결과 이 지역에 있는 독일계 정권과 비독일계 정권의 통치를 받는 독일인들에 대한 지원과 통합을 꾸준히 추진했다. 그러나 이 부서는 1969년 내독관계부(Ministerium fuer innerdeutsche Beziehung)로 개편되는데 서독은 소련, 폴란드 등과의 관계 개선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구독일제국 영토에 대한 미수복 지역 영유권 주장을 대외적으로 포기하고(실질적인 포기는 1990년 통일과정에서 2+4조약을 추진하면서 이루어졌다), 범독일문제부를 동·서독 분단문제를 전담하던 전독일문제부로 개편했다(Jesse & Mitter, 1992, 28). 서독 정부는 1991년 내독관계부가 해체될 때까지 통일 문제를 '동·서독 간의 문제로 봤고, 이를 전담하는 주체가 '통일부'가 아닌 '내독관계부'란 인





식을 갖고 있었다. 이는 하나의 독일에 두 개의 정권이 공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인식은 서독 수립후 정부 관계자의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야콥 카이저 초대 범독일문제부 장관은 1951년 3월 2일 잘츠부르크에서 한 연설에서 “진정한 의미의 유럽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다시 통일되어야 한다. 내가 기억하기로 통일독일의 강역은 독일(동·서독 지역) 이외에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일부, 자알란트와 알사스-로렌을 포함한다(Neue Zürcher Zeitung, 1952년 1월 26일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1965년 에리히 멘데 장관의 ‘범독일문제부’ 개칭에 관한 의견에서도 “[...] 전독일문제부에서는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에 있는) 남티롤이나 (프랑스의) 엘사스-로렌이 포함되지 않는다. [...] 이러한 이유로 우리 부서의 정확한 명칭은 통일문제에 관한 연방부처로 개칭해야 한다(Die Zeit, 1965. 10. 26.)”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단체제에 대한 서독 정치인과 관료의 인식은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정책, 특히 통일 대비 언론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즉 ‘하나의 독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통일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효용에 대한 계산보다는 ‘극복해야 할 민족적 과제’인 분단 문제 해결을 우선시했음을 알 수 있다.

서독은 연방 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과 주 정치교육원을 활용하여 서독 주민들에게 ‘통일 준비를 위한 시민교육’을 했으며, 동독 주민/범독일지역 거주 독일인 대상으로 제작하는 인쇄 및 시청각 교재에서 ‘범독일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 기관들은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서의 시민 재교육을 위한 투자를 늘렸다.

또한 동·서독 간에는 상대방의 매체 이용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TV의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청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서독 공영방송 TV프로그램은 동독 지역 1/2 이상에서 지상파를 통해 시청 가능했다. 동독 시청자가 직경 60-99cm 사이 위성수신용 접시형 안테나를 설치했다면 독일우정공사가 운영한 통신위성 코페르니쿠스(Kopernikus)를 통해



서독 상업방송을 부분적으로 시청할 수도 있었다. 더욱이 서독과 동독은 텔레비전 송출 방식도 유사했다. 서독은 PAL, 동독은 SECAM 방식을 채택했고 이 두 방식은 호환됐다. 전압도 50Herz로 동일했다. 라디오의 경우도 서독 방송은 약 8%의 동독 지역에서 청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독의 인쇄매체를 동독에서 보는 것은 오랫동안 금지된 반면, 동독의 인쇄매체는 서독에서 구독할 수 있었다(심영섭, 2015; Mueller-Roemer, 1994).

또한 동·서독 간에는 언론인과 특파원 파견이 가능했다. 동·서독은 1972년 기본조약에 따라 상호 특파원 파견 및 취재 허용에 합의했다. 초기 동·서독 간에는 특파원 파견과 관련해 많은 갈등이 있었다. 동독정무원은 서독에 파견할 특파원과 관련해 동독 외교부에서 ‘외국특파원 비자를 발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독은 이를 거부하고 동독공보청이 이를 담당 하라고 요구했다. 서독정부 입장에서 동독은 분단독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3국’이 아니었다. 그래서 서독정부는 서독언론인에게 동독공보청이 ‘통행증’ 또는 ‘취재증’ 정도를 발급해주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동독정부 입장에서 동·서독은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국가로 서독은 엄연히 제3국이었다. 제3국 언론인이 동독에 입국한다면 사증(Visum)을 먼저 받아야하고, 이후 취업규칙에 따른 ‘취재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동·서독 정부의 완강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었기에 동베를린지역에 상주하는 서독 특파원과 동베를린의 지역을 취재하는 서독 언론인에 대한 별도의 여행허가서 등을 통해서 제한적인 취재허가를 내주는 절충안으로 해결되었다.

동독은 1973년 3월 5일 첫 번째로 서독 통신사와 방송사, 신문사 특파원 비자를 발급했다. 이후 1973년 3월 9일 서독 뉴스통신사인 DPA가 동베를린에 특파원을 파견했으며, 순차적으로 공영방송인 ARD, ZDF 특파원과 신문사 특파원이 동독에 파견되었다(Berié et,

2008, 204). 이러한 상호 언론인 교류로 서독언론이 동독에 파견한 상주 특파원과 순회 특파원을 통한 취재와 보도는 동독 주민이 동독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실한 정보를 얻는 통로로 기능했으며, 독일통일에도 기여했다. 반면 동독의 경우 서독으로 파견한 동독언론인의 상당수가 슈타지(비밀경찰) 관계자였고, 근본적으로 보도목적보다는 정보수집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김영욱·심영섭, 2012).

3. 동독주민의 서독TV 시청

동·서독이 군사적 시설물과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는 경계선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이 경계를 넘어 서독의 텔레비전 전파가 동독에서 광범위하게 수신되었다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특수 상황이었다. 헤세(Hesse)는 “세계 모든 곳에서 외국 방송의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지만, 동독 주민들의 서독 라디오와 텔레비전 수신의 경우 두 나라의 언어가 같고 분단국가로서의 공통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용 정도가 강하고 다양했다는 점에서, 특히 동·서독이 이념적으로 대립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일 대 독일 상황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다(Hesse, 1988, 19)”라고 분석했다. 라디오가 국가의 영역을 넘어 전파되는 사례는 흔하지만, 텔레비전은 국가의 경계를 넘기 힘들었다. 텔레비전은 영상과 음성을 전달하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다른 미디어보다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의 현장감과 진실성의 임팩트가 크다. 또한 오락성 때문에 텔레비전은 다른 대중 미디어 보다 관심을 끌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 특히 동·서독의 경계는 단순한 지역적 혹은 국가적 경계가 아니라 서로 적대적인 혹은 경쟁하는 체제를 가르는 경계였다. 다른 한편으로 경계선 양쪽에는 역사적·문화적 동질감이 있었고 무엇보다 언어적 장벽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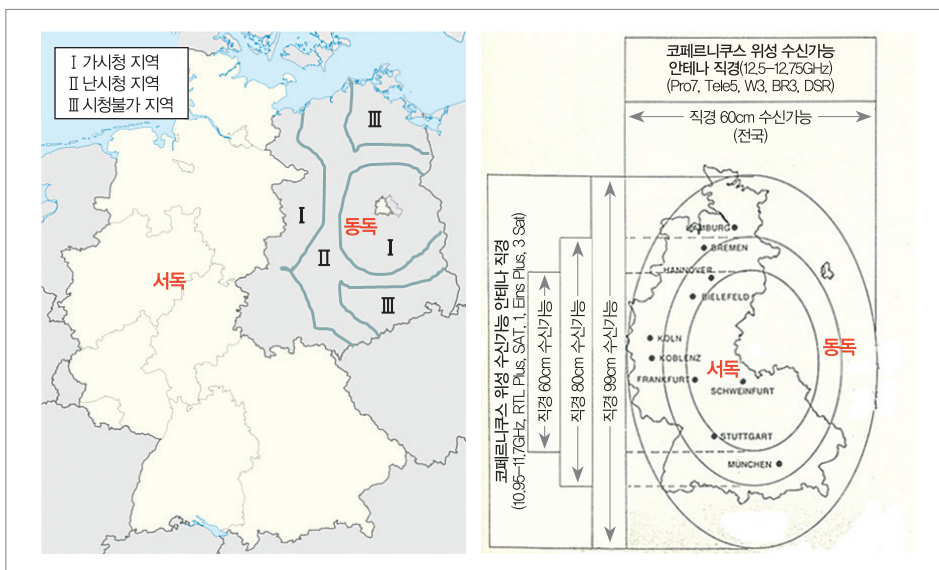
동독 텔레비전 방송이 서독 주민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동독 주민들은 서독 텔레비전을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용했다. 이런 상황을 헤세는 “저녁마다 독일에서 전파적 통일이 이루어진다(Hesse, 1988, 9)”고 표현했다. 그 결과 동독의 미디어 정책과 동독 방송은 그 실효성에 있어서 주권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동베를린에는 서독 특파원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동독에 대한 보도와 동독 텔레비전의 보도를 비교할 수 있었다.

동독 텔레비전에 비친 동독의 모습은 성공적이고 행복하며, 만족하고 빛나며,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다. “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그들의 사회주의 지도자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손을 흔들고, 환호를 지르며 빨간 카네이션을 그에게 선사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그들의 업적을 나타냈고, 노래하고 춤추며 사회주의적 이상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행진했다”고 가이슬러(Rainer Geißler)는 동독 주민들의 불만

이 극도로 높아 가던 1989년 동독 텔레비전에 나타난 동독 상을 묘사했다(Geißler, 1990, 297). 동독 텔레비전의 뉴스 프로그램인 ‘악투엘레 카메라(Aktuelle Kamera)’를 비롯한 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고스(Goss)의 분석(1977년 3월 1일-6월 1일)에서도 동독의 텔레비전이 동독의 경제적 발전과 대외적인 주체성, 역할 등을 강조한 반면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거의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Goss, 1980, 61이하).

분단시기 동독 전역에서 서독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1980년까지는 주로 서독 접경지역과 베를린 주변지역에서만 시청이 원활했다. 특히 동독의 14개 지역(Bezirk) 가운데 폴란드와 체코 접경 지역에 위치한 노이브란덴부르크(Neubrandenburg) 전체와 로스토크(Rostock) 동부, 드레스덴(Dresden) 전체는 서독 방송 시청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1980년 말까지 점차 서독 텔레비전 가시청 지역은 넓어져 갔다. 여기에는 안테나 개조, 전자 필터나 수신강화기 등 부속설비 설치, 공동안테나, 유선 설치 등 동독 주민들의 창의력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Beutelschmidt, 1995). 동독은 DFF를 서독 지역으로 송출하기 위해서 동·서독 접경 지역에 송신소를 대거 설치했지만, 전파가 서독 지역에 제대로 전달되지는 못했다. 동독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했던 서독 지역에서도 동독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인기는 높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에는 90% 가까운 동독 주민이 ARD와 ZDF를 수신할 수 있었다고 추정되었다(Linke, 1987, 45).

〈그림 1〉 동독 지역에서 시청 가능한 서독 지상파, 위성방송(1980-1990년)



출처: Holzweißig, 1989과 Mueller-Roemer, 1995를 기초로 재구성.

4. 서독언론의 동독보도 경향

서독 10개 주 방송법과 공영방송 정관은 서독 기본법에서 강조한 통일이라는 원칙을 존중하며 방송하도록 규정했다. 1980년 8월 20일 체결된 북부 독일지역 공영방송인 북독방송(NDR) 국가협약에서는 북독방송의 프로그램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독일이 통일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63년 4월 1일 개국한 전국TV채널인 독일제2TV방송(ZDF)의 정관 제3조도 “독일제2TV는 전체 독일 TV시청자들에게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특히 독일의 현실에 대한 공정한 모습을 전달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원칙은 서독언론인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했다. 그럼에도 서독방송에서 동·서독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은 극히 일부였다. 예컨대 ZDF의 <표식D-동서에서 온 독일(Kennzeichen D-Deutsches aus Ost und West)>이나 ARD의 <대조(Kontraste)>라는 프로그램은 “친애하는 동독의 시청자 여러분”이라는 인사말로 시작하곤 했다. 이러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서독언론의 식적으로 동·서독 화합이나 통일 보도를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서독언론은 동독에 관한 보도에서 외국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건과 유사하게 보도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분단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방송뉴스가 갖는 일상성, 근접성, 흥미성 등의 기준에서 동독관련 뉴스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Goss, 1980; Hartmann-Laugs & Goss, 1988).

예컨대 1977년 3월 1일에서 6월 1일 기간 방송된 ARD와 ZDF의 뉴스 및 정치 매거진 프로그램을 분석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독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룬 보도는 보도 대상 국가별로 구분한 보도 중 1.9%, 방영 시간 기준으로는 3.3%에 머물렀다(Goss, 1980, 78). 또한 보도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프랑스 관련 보도가 1.9%, 이탈리아 관한 보도가 2.0%의 비율을 차지한 점을 고려하면, ‘전 독일에 관한 광범위한 보도’라는 ZDF 정관이 지칭한 독일은 서독이었고, 동독은 인접국가와 다르지 않게 다뤘음을 알 수 있다(Goss, 1980). 독일 양대 공영방송의 저녁종합뉴스인 ZDF의 <호이테(heute)>와 제1채널(Das Erste)의 <타게스샤우(Tagesschau)>에만 국한시켜 보면 동독 관련 보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도건수 및 보도시간 기준에서 모두 1.5%에 불과했다(<표 1> 참고). 이에 비해 동·서독 관계에 대한 보도는 각각 4.5% 및 4.6%를 차지해 동·서독 관계가 동독 관련 보도에 비하면 더 많이 다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도경향은 5년 뒤 실시된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1983년에는 1977년에 비해 동독에 관한 보도 건수와 보도 시간이 각각 0.3%와 0.4%증가하여 1.8%와 1.9%로 집계되었다. 결국 1977년과 1983년 조사를 비교하면, 동독에 대한 서독언론의 관심은 전체

〈표 1〉 서독TV뉴스에 나타난 동독 관련 보도 분석-〈호이테(ZDF)〉와 〈타게스사우(ARD)〉

	보도 건수 기준			보도 시간 기준		
	1977	1983	차이	1977	1983	차이
서독에 관한 보도	54.1%	55.5%	+1.4%p	56.4%	59.4%	+3.0%p
동독에 관한 보도	1.5%	1.8%	+0.3%p	1.5%	1.9%	+0.4%p
서독과 서방 동맹국 관계	4.8%	4.7%	-0.1%p	6.0%	5.5%	-0.5%p
동독과 동구 동맹국 관계	0.1%	0.2%	+0.1%p	0.1%	0.2%	+0.1%p
동·서독 관계	4.6%	6.3%	+1.7%p	4.5%	5.7%	+1.2%p
기타 국제보도	34.5%	30.7%	-3.8%p	31.2%	27.1%	-4.1%p
	n=2229	n=2546		n=2229	n=2546	

조사 기간 1977년: 3월 1일 - 6월 1일, 1983년: 3월 15일 - 6월 15일.

출처: Hartmann-Laugs & Goss, 1988, 100.

보도의 2% 내외였다고 볼 수 있다(Hartmann-Laugs & Goss, 1988).

이러한 동독 관련 뉴스결핍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준 것이 양대 공영방송의 시사매거진이 다. ARD의 〈대조〉가 1983년 전체 방송분의 1/3이 동독 내부 사정에 대한 보도였고, ZDF의 〈표식〉과 〈ZDF매거진〉이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도 바이에른공영방송과 남서독공영방송, 북독공영방송 등이 동독 관련한 르포를 종종 방영했다(Hartmann-Laugs & Goss, 1988, 49).

서독방송의 동독보도는 별도의 보도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갈등사안에 대한 비판적 보도성향이 강한 서독방송의 저널리즘 성향에서 본다면, 동독 관련 보도의 성격은 비판적이었지만, 서독정치나 서독사회에 대한 보도보다는 오히려 객관적이고 수위가 낮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방송에 비친 동독사회는 매우 비판적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Goss, 1980, 80). 1980년대 초 실시된 독일과 영국 언론인에 대한 직업윤리에 대한 비교연구에 따르면, 영국 언론인들은 자신들을 1) 중립적 보도자, 2) 독자 혹은 시청자의 흥미 제공자, 3) 부조리에 대한 비판자의 순으로 인식한 반면, 독일 언론인들은 1) 부조리에 대한 비판자, 2) 중립적 보도자, 3) 힘없는 사람들의 대변인의 순으로 응답했다(Erbring, 1989, 310이하). 이 조사에서 스스로를 “지성인”으로 이해하고 있는 언론인의 비율이 독일 언론인에게서는 42%로 영국 언론인 14% 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ARD 〈대조〉의 경우, 담당PD가 동독에서 추방된 언론인 출신이었는데, 동독사회에 내재된 부조리를 날카롭게 파헤치고 비판했었다. 그럼에도 분단시기 독일 양대 공영방송의 동독 내부에 대한 보도는 동독정치나 동독경제, 동독정치인에 대한 보도보다는 동독사회와 동독문화, 동독청소년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Belke, 2010). 이는 서독언론인이

동독에 특파원으로 상주하며 취재할 수 있었지만, 엄격하게 통제된 동독지도부나 동독경제에 대한 서독특파원들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웠기에 사회비평이나 인상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서독방송의 동독관련 보도가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서독방송은 동독의 내부 부조리를 지적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일방적 보도를 하지는 않았다. 특히 서독방송은 동독 체제의 성공적 모습이나 치적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예컨대 동독 형법의 자유주의적, 인본적 측면이나 동독 형무소의 수감자 인권보호를 위한 처우개선 등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ZDF의 <표식D> 보도량의 절반정도는 긍정적인 내용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부정적이었다(Goss, 1980).

동독 주민들의 서독 정치 보도에 대한 신뢰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 서독 시청자들은 서독 텔레비전이 서독의 상황을 보도할 때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들과 비교할 수 있었다. 서독 시청자들은 ARD와 ZDF가 국내 문제를 보도할 때 보이는 중립성과 비판성의 정도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직접 평가할 수 없는 외국에 관한 보도나 동독의 보도를 받아들였을 것이다(Schneider, 1984, 200참조). 동독 시청자들이 동독 텔레비전의 보도를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동독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은 실제로 더 심각할 것이라고 추측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독인들이 실제 경험할 수 없는 서독의 상황에 대한 서독 텔레비전의 보도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동독인에게 부분적으로 허용된 서독 방문, 서독에 사는 친지들과의 접촉들이 단편적으로 평가의 기회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보다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동독 상황에 대한 서독 텔레비전의 보도를 통해서 서독 텔레비전의 보도 경향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서독의 정치 보도에 대한 동독 주민의 높은 신뢰는 서독 언론인들의 동독 상황에 대한 비교적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영옥·심영섭, 2012).

동독 정권은 사회주의 이상 실천을 위한 선전선동도구로 방송을 활용하는 정책이 서독텔레비전의 영향력 증가로 어려움을 겪자, 서독 텔레비전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를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는 대응책과 더불어 시청자확보를 위한 새로운 포맷 개발에 앞장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에서 서독방송의 선호도는 떨어지지 않았다(Linke 1987, 49).

언론에 대한 레닌의 선전선동전략은 동독에서도 중요한 기본원칙이었지만, 자본주의국가와 경쟁해야 하는 동독체제로서는 불가피하게 동독주민들이 선호하는 서독TV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동독정권은 1970년대까지만해도 서독TV수신을 방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주민들의 개인적 서독 방송 수신을 형법으로 금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로프 게세릭(Rolf Geserick)은 그 이유 중 하나로 나치 독일에서

의 경험을 들었다(Geserick, 1989, 165). 반파시즘을 국가 건설의 기본 정당성으로 내세운 동독이 나치가 적국방송(Feindsender)을 금지하고 적발되면 처벌했던 사례를 따르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1958년에 개정된 형법에서 금지한 사항은 서독 방송의 개인적인 수신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서독 방송의 수신을 조직하거나 서독 방송의 내용을 반체제적인 목적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행위'였다. 실제 이 법 규정에 의한 처벌 사례도 있었다. 또한 기술적으로 서독 텔레비전 시청을 막기가 어려웠고, 이를 금지하기도 어려웠다(김영욱·심영섭, 2012).

서독 프로그램의 시청에 대한 방해 노력은 형법적 장치보다는 심리적 압박이나 캠페인을 통한 것이었다(Linke, 1987, 53이하; Geserick, 1989, 156이하 참조). 신축된 아파트에는 공동안테나를 설치하여 서독 방송 시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서독 방송 수신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합적 서약서 제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961년에는 “계급의 적은 지붕에 앉아 있다”는 구호 아래 서독 방송 시청을 위해 설치된 안테나를 제거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돌리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불응할 경우 동독 청소년 단체 ‘자유독일청소년(FDJ)’ 단원들로 하여금 서독으로 향한 안테나를 강제 철거하게 했다. 불응할 경우 그 사람의 이름,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을 함께 지역 신문에 게재하여 압력을 가했다.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심지어 서독 방송을 시청하는 부모를 자녀들이 공개하도록 했다.

동독 집권층은 동독 주민의 서독 프로그램 시청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서독 방송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학교 교육이나 동독 텔레비전 프로그램 변화 등이 그러한 예이다. 동독 텔레비전의 지루하고 딱딱한 모습은 동독 집권층에서도 비판이 되었다. 동독 텔레비전 보도에서 일방적이고 교육적인 어조를 객관적이고 사실을 알리는 어조로 바꾸는 노력을 했다. 또한 화면 구성에서도 ARD와 ZDF의 외양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오락 분야에서도 오락을 부르주아적 행동과 사고 양식에 가까운 것으로 보던 시각에서 근로자의 재생산에 필요한 요소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당의 통치 수단으로 하나로



보는 입장과 이를 통해 대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본 목표에는 변함이 없었다(김영옥·심영섭, 2012).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동독 주민의 서독 프로그램 시청이 묵인의 정도를 넘어 거의 공개적으로 인정되게 된다. 호네커(Honecker)를 비롯한 집권층 인사가 공개 석상에서 자신이 본 ARD와 ZDF 프로그램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당 간부가 서독 텔레비전을 통해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실상을 알 수 있어 유익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동 안테나, 유선 등을 통해 동독 주민들의 서독 방송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기까지 한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유선설비 사업에서는 안테나를 통해 이미 서독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 서독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다. 서독 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유선설비를 통해 추가적으로 서독 방송 시청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공식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이를 주관하고 국가에서 물적 지원을 하는 방법을 택했다(Linke, 1987, 60이하).

서독 텔레비전에 대한 동독의 태도 변화는 동독의 집권층이 겉으로 내세운 자신감이나 유익성보다는 서독 프로그램 시청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독은 앞서 언급한 서독 방송 공동 시청이나 시청한 내용의 전파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1980년대에는 서독 방송의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동독 방송 정책이 집중되었다. 1990년까지도 동독 국가기관, 군인, 경찰관, 소방관들에게는 서독 방송 시청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김영옥·심영섭, 2012).

방송과 달리 서독신문을 동독에서 구독할 수는 없었다. 동독에서도 서독 신문물을 읽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줄곧 있었으며, 1975년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회원국 사이에는 모든 정보를 폭 넓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가 있었지만, 동독은 이를 거부했다. 서독 신문과 잡지는 공무상 그리고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한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독으로의 반입이 허용되었다. 반면 서독에서는 1971년부터 동독 신문과 잡지를 제한 없이 구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수요는 높지 않았다. 학술적 또는 업무상 동독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서독 시민은 대략 5,000명 내외였다. 동독 또한 서독에서 동독 신문과 잡지를 판매하는 데 큰 관심이 없었다. 또한 1961년 결정된 포고에 따라 동독 지방일간지는 1989년까지 서독에 수출이 금지되었다.

동·서독 사이의 신문교류는 1964년 동독 SED 서기장이었던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가 제안한 내용이었다. 울브리히트는 서독 주간지 디 차이트(Die Zeit)지와 일간지 쾰른도이체 차이팅(Süddeutsche Zeitung)지를 동독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서독에서는 동독 SED 당기관지인 노이에스 도이취란트(Neues Deutschland)를 판매하도록 제안한 것이다. 또한 동독은 디 차이트와 노이에스 도이취란트가 기사를 상호 교환하도록

제한했는데, 실제로 더 차이트가 제공한 기사를 동독에서 한 차례 인쇄한 뒤 SED는 기사 교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버렸다. 또한 동독은 우편검열이 가능한 신문과 잡지만을 수입하자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서독에서 수입된 신문과 잡지는 서독공산당 계열의 신문과 비정치적인 전문잡지뿐이었다. 이러한 제한적인 수입조치는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동독 SED 서기장이 1987년 서독을 방문한 뒤부터 풀렸다.

서독의 양대 일간지인 <취드도이체 차이퉁>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Frankfurt Allgemeine)>에서 동독에 관한 보도와 동독발 보도는 ‘국내 정치’ 면에 게재되었다(Dernbach, 1990, 15). 이는 서독이 동독문제를 국내문제의 일부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서독일간지에서 통일부나 동독부는 없었지만, 동독과 공산권 문제 전문가가 있어서 동독에 대해 전문적인 보도를 했다(김영옥·김택환, 2000).

분단기 서독신문은 서독정부가 추진한 긴장완화 정책(Entspannungspolitik)에 대한 보도태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Chmel 2009, 423이하). 진보적 성향과 자유주의적 성향의 신문사는 긴장완화정책에 찬성했지만, 이들은 동독을 인정하고 통일 추진을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쪽을 선택했다. 동독 정부가 주권을 확립하고 동·서독 대화를 진척시키면 동독 내의 정권 비판자들에 대해 보다 관용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들은 동·서독 간의 대화를 통해 분단된 양독 주민들 사이의 연대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았다(김영옥·심영섭, 2012).

보수언론은 긴장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악셀 슈프링어(Springer) 계열 신문사에 소속된 언론인들은 대화와 긴장완화가 잘못된 길이며 궁극적으로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중요시했다. 이 그룹 신문사들은 동독의 국가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동독의 공식 국호인 DDR(독일민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따옴표를 사용해 “DDR”이라고 표현했다. ‘악셀 슈프링어’ 그룹은 이 방식의 표현을 1989년 8월까지 유지했다. 이를 두고 상업적인 오용이며 현실에 대한 부정이라는 등 비판도 많았다. 그러나 ‘악셀 슈프링어’ 측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따옴표를 통해 1천 7백만 독일인이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김영옥·심영섭, 2012).

5. 언론의 절대적 정신윤리와 실천적 책임윤리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정부가 취했던 기만과 여론조작시도를 비판했던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거짓도 정치공학의 일부로 기능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치는 여론과 사회적 합의라는 비슷하지만 다른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상수로 기능한다고 했다. 특



히 정치적 논의과정에서 진실은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정치는 현실적 제약을 뛰어넘어, 구태를 걷어내고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거짓을 적절하게 활용한다고 본 것이다

(Arendt, 1987). 언론의 역할은 정치행위와 사회적 합의, 국민여론이라는 유동적인 정치현상을 관찰하여 묘사하고, 사회현상을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언론이 단순히 새롭게 취득한 정보를 여과 없이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면 누군가의 '대변인' 노릇만 맡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수행하는 비판적 활동은 '현상에 대한 여과'를 위해 무수히 많은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진위 여부를 가늠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막스 베버(Max Weber)의 분석처럼 언론에 주어진 사명은 정신훈리(Gesinnungsethik)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로서 보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충분한 심사숙고(Ausgewogenheit)를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Weber, 1973).

분단 시기 서독 언론인의 동독보도를 살펴보면, 현존하는 두 체제에서 동족이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현실묘사와 더불어 사회적 모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뒤따랐다. 베버의 분석처럼 서독언론의 오래된 전통인 책임윤리 실천을 위한 언론인의 '기본적 소양'은 분단기 서독언론의 동독이나 통일관련 보도에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입법화할 필요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서독에서 1970년대부터 일반화되었던 신문과 방송사에서 편집규약과 편성규약 제정을 통해 취재와 제작, 편집편성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자율권을 폭넓게 보장해 준 경향이 있다. 특히 서독정부는 매주 3회 연방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실시하여, 모든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했다. 물론 안보나 외교 등 특정한 사안에 대한 보도시점 유예나 보도금지 사항도 있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했다.

분단기 동·서독과 남·북한을 직접 비교하기는 매우 어렵다. 첫째, 분단과정의 차이가 있다. 동·서독은 제3제국이 패전하고 전승국에 의해 4등분된 경험을 바탕으로 분단이 시작되었다. 반면 한반도는 이념적 대리전쟁을 통해서 상호 적대적 분위기 속에 70여 년을 대치해왔다.

둘째, 지리적 환경의 차이가 있다. 남·북한은 한반도를 절반으로 분할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로나 해로를 통해 제3국에서만 상호 교류가 가능한 구조이다. 심지어 방송전파나 통신전파마저도 적절하게 차단이 가능한 지리적 환경이다. 반면 동·서독은 남북으로 길

게 국토를 ‘L’자형으로 분할했고, 심지어 동독 심장부에 위치한 베를린은 동서로 분단되어 있었다. 동·서독은 아무리 장벽으로 막아 놓아도, 주민 간 접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유럽대륙에서 전통적으로 우회를 통한 교류는 신성로마제국시절부터 일상화된 관행임을 고려하면, 한반도에서처럼 절대적인 통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조였다.

셋째, 동·서독 교류의 핵심은 정보교류와 일상적 민간교류에서 시작되었다. 자유로운 우편교류와 제한적이지만 통신회합, 방송 송·수신, 방송프로그램교환, 특파원 파견 등은 사실상 서로를 이해하고 ‘합의’를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1990년 전후 동·서독 통일을 가장 두려워했던 주변국가가 오스트리아였다. 오스트리아 지식인 대부분은 동·서독 통일로 또 다른 ‘괴물’이 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비록 분단을 경험했지만, 동·서독은 ‘독일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더 호전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Gries, 2010). 이러한 오해와 의심을 받을 만큼 분단기에도 동·서독 언론은 ‘독일인’, ‘독일문화’라는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벗어난 보도를 하지는 않았다. 서독언론의 보도행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절대적 정선윤리를 바탕으로 한 ‘독일정체성’ 찾기와 책임윤리를 바탕으로 한 ‘사실보도와 정치현상에 대한 비판적 관찰 그리고 합리적 대안모색’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은 올해만 세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변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정세와 북한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남북 언론 교류 활성화와 평양 지국 설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같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불신 관계에 있던 남과 북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일 것이다.

현재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언론사 스스로 제정한 실천 강령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분단 과정에서 오랫동안 쌓인 갈등과 반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언론사 내부적으로 팩트체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보도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보다는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언론이 의제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서독 분단과는 매우 다른 한반도 분단 환경에서 시간과 기회비용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북한보도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언론인재교육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북한보도를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정확한 보도와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 언론교류를 위한 민간차원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의 지원도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노동당과 정무원이 언론사를 소유한 특수한 상황이다. 즉, 북한의 언론기관은 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이다. 이러한 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오는 차이에 대한 설명과 교육도 통일부와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언론이 북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여나가는 데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인 스스로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남북한 사이의 차이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영욱·김택환 (2000). <남북문제 보도의 새로운 모색 - 독일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함께>. 서울: 한국언론재단.
- 2) 김영욱·심영섭 (2012). <통일과 언론: 독일의 경험>.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3) 심영섭 (2015). 독일통일과정에서 위성방송의 역할에 대한 연구. <문화와 정치>, 제2권 제2호, 53-79.
- 4) Arendt, H. (1987). *Wahrheit und Luegen in der Politik, Zwei Essays*. Muenchen: Piper.
- 5) Belke, J. (2010). Das Bild der Ostdeutschen im oeffentlich-rechtlichen Fernsehen. In: Thomas Ahbe, Rainer Gries, Wolfgang Schmale (Hrsg.), *Die Ostdeutschen in den Medien*. Leipzig.: Leipziger Universitaetsverlag, 135-180.
- 6) Beutelschmidt, T. (1995). *Sozialistische Audiovision, Zur Geschichte der Medienkultur in der DDR*, Berlin: Verlag fuer Berlin-Brandburg.
- 7) Brié, E. Loechel, C., von der Stein, G., Steinhoff, T. (2008). *Der Fischer Weltalmanach, Chronik Deutschland 1949-2009*, Frankfurt a.M.: S. Fischer Verlag.
- 8) Chmel, C. (2009). *Die DDR-Berichterstattung bundesdeutscher Massenmedien und die Reaktionen der SED(1972-1989)*, Berlin: Metropolis Verlag.
- 9) Dernbach, B. (1990). *DDR-Berichterstattung in bundesdeutschen Qualitätszeitungen, Eine empirische Untersuchung*, Verlag der Kommunikationswissenschaftlichen Forschungsvereinigung.
- 10) Erbring, L. (1989). "Nachrichten zwischen Professionalitaet und Manipulation. Journalistische Berufsnormen und politische Kultur" Kaase, Max & Schulz, Winfried (Hrsg.), *Massenkommunikation, Theorien, Methode, Befunde*, Westdeutscher Verlag, 301-313.
- 11) Geissler, R. (1990). "Agitation als Selbsttaeuschung. Thesen zu den politischen Funktionen des DDR-Fernsehens vor der Wende (am Beispiel der Aktuellen Kamera)", Ludes, P. (Hrg.), *DDR-Fernsehen intern, Von der Honecker-Ära bis Deutschland einig Fernsehland*, Berlin: Volker Spiess, 297-306.
- 12) Goss, A. J. (1980). *Deutschlandbilder im Fernsehen, Eine vergleichende Analyse politischer Informationssend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Koeln: Wissenschaft und Politik.
- 13) Geserick, R. (1989). *40 Jahre Presse, Rundfunk und Kommunikationspolitik in der DDR*, Minerva-Publ.
- 14) Gries, R. (2010). Perspektiven einer Historgraphie deutsch-deutscher Kummunikationsraeume. In: Thomas Ahbe, Rainer Gries, Wolfgang Schmale (Hrsg.), *Die Ostdeutschen in den Medien*, Leipzig.: Leipziger Universitaetsverlag, 17-36.
- 15) Hartmann-Laugs., Petra S. & Goss, Anthony John (1988). *Deutschlandbilder im Fernsehen II - Politische Informationssend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Zeitvergleich und neue Aspekte, Wissenschaft und Politik.
- 16) Hesse, Kurt R. (1988). *Westmedien in der DDR, Nutzung, Image und Auswirkungen bundesrepublikanischen Hoerfunks und Fernsehens*, Koeln: Wissenschaft und Politik.
- 17) Hesse, K. R., (1990). "Fernsehen und Revolution. Zum Einfluss der Westmedien auf die politische Wende in der DDR", *Rundfunk und Fernsehen*, 38(1990), 328-342.
- 18) Holzweissig, G. (1989). *Massenmedien in der DDR*. Berlin: Verlag Gebr. Holzapfel.
- 19) Jesse, E. & Mitter, A. (Hrsg.) (1992). *Die Gestaltung der deutschen Einheit*. Bonn: Bouvier Verlag
- 20) Kant, I. (1970). Zum ewigen Frieden. In: Otto Heinrich von der Gablentz (Hrsg.), *Immanuel Kant, Politische Schriften*, Koeln-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04-150.
- 21) Linke, N. (1987). "Die Rezeption der Programme von ARD und ZDF in der DDR als Gegenstand der SED-Kommunikationspolitik", *Publizistik*, 32 (1987), 45-68.
- 22) Meissner, Boris (1982). *Die deutsche Ostpolitik 1961-1970*. Koeln: Verlag fuer Wissenschaft und Politik.
- 23) Mueller-Roemer, F. (1995). *Medientechnik*, FU-Berlin: Seminar Material.
- 24) Schneider, B. (1984). "Wenn der Klassenfeind das Programm bestimmt, Medienwirklichkeit in der DDR", *Publizistik* 29(1984), 197-202.
- 25) Weber, M. (1973). *Gesammelte politische Schriften*. Tuebingen: UTB, 505-560.



남북 신뢰 제고를 위한 공동 언론중재기구 구축의 필요성

변상욱 CBS 대기자

1. 남북언론중재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수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며 항구적 평화체제를 향해 진일보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의 숙원이라 할 남북의 평화와 협력에 대해 이념적 갈등은 물론 정치사회적 저항도 결코 만만치 않다. 이는 오랫동안 냉전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온 우리 사회의 취약함과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부가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배경은 파당적 이익과 상황논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첫째는 ‘기득권 유지’란 가치로 설명할 수 있다. 지금의 기득권 체제를 크게 흔들지 않고 무리 없이 유지하고 싶은 세력이라면 전쟁중식은 갈급하지 않다. 또한 이념적 대결을 토양으로 사적 혹은 집단적 이익을 추구해 가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변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둘째로는 ‘상황의 유불리’다. 자기편이 확실히 이기고 있다면 승리와 이득이 눈앞인데 싸움을 멈추기보다는 압박을 계속해 나가자는 논리일 것이다. 셋째는 상대가 ‘협상 테이블로 기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종결방식이다. 무조건 항복에 가까운 협상테이블이 더 큰 이득을 가져온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저널리즘의 문제는 평화체제 구축을 저어하고 저항하는 대열에 언론들도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서 전혀 근거 없는 오보나 명백한 허위보도를 뿌리기

도 한다. 또 다수의 언론은 비판적 사고 없이 일부 언론의 왜곡 및 허위보도를 그대로 베껴내며 동참하고 있다. '저널리즘이 평화와 공공선 대신 분쟁을 목표로 하는 걸 편의상 '호전적 저널리즘'이라 한다면 분명 우리 언론의 일부는 '호전적 저널리즘'을 펼치고 있다.

〈호전적 저널리즘〉은 지금까지 상대를 향한 공포심을 극대화시키며 적대감과 혐오를 부추겨 왔다. 또 작은 분쟁에 대해 더 강력한 응징과 보복을 요구하며 분쟁의 판을 키우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래서 민주적이기보다는 권위주의적인 지배체제를 응원하고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종전 및 평화를 위한 남북한, 북미 간의 대화가 전격적으로 진행되는 국면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를 과대포장해 결렬 쪽으로 몰고 가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호전적 저널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평화협상을 저지하려는 정략적 프로파간다를 비판하거나 일축하기보다는 오히려 발굴해 내고 확성기 노릇을 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지난 2015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당했다는 국정원의 국회 비공개 현안보고 보도이다. 이 보고 내용이 알려지고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받아썼지만 언론 보도 다음날 현영철 부장은 조선중앙TV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3년 8월엔 TV조선이 현송월 단장이 공개 총살됐다고 보도했지만 오보로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한미정상회담을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 중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북미정상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에 기자들을 만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음이 확인됐다. 최근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 취재진에 비자 명목으로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고 역시 오보였다. '풍계리 폭파 현장은 조작이고 폭파 현장처럼 꾸미러 연막탄을 터뜨린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 역시 오보로 확인됐다. 취재진을 현장에 보내지도 않았고 현장에 접근한 우리 측 폴 취재단과 외신취재단은 전혀 이런 내용의 기사를 타전하지 않았는데 '연막탄 흔적' 운운하는 보도가 가능한 것은 지나친 상상력 아니면 의도적인 물타기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종전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호전적 저널리즘〉은 오랜 세월 굳어진 공고함을 갖고 있다. 특정 언론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쟁과 분쟁은 폭발적이다. 반면 평화는 길고 지루한 과정이다. 저널리즘은 오랫동안 폭발적 사건에 집중하도록 훈련돼 왔다. 흥흥한 폭력이나 갈등일수록 주목한다. 남-북, 북-미, 남-북-미-중 사이에 길게 이어질 평화회담과 실무협상은 기존 저널리즘의 입장에서는 지루하고 짜증스런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흥흥함의 천착이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고 본령일까? '호전적 저널리즘'은 우리 저널리즘이 그 책무와 본령에 대한 자성을 갖추기 전에 남북 간 이해와 견해의 차이를 파고들며 평화로 가는 길을 흔들 것이다. 회담이 난항에 빠지거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그 이슈를 과대포장해 비판론을 펼 것이고, 그 외 다수 언론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베껴 지면을 채울 것이다.

지금은 종전협상과 핵폐기 상황 등 대형 이슈와 관련한 왜곡이나 무책임한 오보가 문제지만 북

한에 취재보도진이 자유롭게 오가게 되고 취재진이 상주하게 되면 양상은 더 복잡해 질 수도 있다. 보다 다양하고 많은 양의 문제 보도가 양산되고, 이 보도들이 남북 관계를 해치거나 어지럽게 할 개연성이 크다고 본다. 남북 관계 개선에 언론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남북 언론중재기구>를 통한 잘못된 보도의 시정 및 예방 조치가 이슈로 등장한 배경이라 하겠다.

2. 남북언론중재기구와 관련된 논의의 전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남북 언론교류 관련 정부-언론단체 간담회’가 지난 7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6·15남측언론본부 등이 참석했다. ‘남북 언론교류 관련 정부-언론단체 간담회’에서 정부는 무책임한 오보와 남북교류에 속도를 내려는 언론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고, 언론은 남북 언론교류를 통제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비판하며 규제를 풀어 달라는 요구를 내놨다. 이날 간담회는 두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로서는 왜곡된 대북 보도 및 오보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놓지 못한 채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물러섰다.

지난 8월 16일에는 역시 프레스센터에서 ‘남북 언론교류 무엇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언론회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론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비상설 회의체’로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언론회의(이하 남북교류 언론회의)’를 가동해 남북 언론교류의 중심을 잡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취지이다. 즉 남측 언론의 소모적 경쟁 관계를 자제하고 남북 언론교류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기구로서의 협의체를 구상하자는 이야기가 이 토론회에서 오갔다. 남북교류 언론회의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해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전국 언론노동조



합, 한국PD연합회, 6·15남측위 언론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남북교류 언론회의는 정부와의 관계, 북측과의 관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자임한 셈이다. 물론 언론 유관단체 전체가 나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움직이겠다고 선언한 것만으로도 의미미하다 하겠으나 ‘비상설 협의체’로서 어떤 근거와 구속력을 통해 남북 언론교류 전반을 컨트롤하고 남북 교류에 언론이 긍정적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 갈 것인지는 미지수로 남겨져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보다 구체적인 제안도 등장했다.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지난 6월 20일 평양에서 열린 ‘6·15민중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에 참석해 <남북언론중재기구>(가칭)을 제안한 것이다.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6·15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에 “남북언론교류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안서를 통해 <남북언론중재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6·15남측위원회는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언론교류 사업 제안 중 하나로 잘못된 언론보도를 바로잡는 기구를 만들어 서로의 불신을 줄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자고 취지를 밝혔다. 남측 언론본부는 “오보방지, 반론 보도 등 남북 언론의 불신을 제거하고, 상호 신뢰성 및 사실보도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 지향적 보도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남북 언론 중재를 위한 공동기구(가칭)’ 마련을 상호 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추진한 6·15남측 언론본부의 정책위원회는 별도로 “남북언론중재기구(안) 발족 추진 제안문”에서 “남북주민이 정확한 상대지역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남북 언론보도에 대한 중재와 정정보도 체제를 만들 것을 제안코자 한다.”며 “현재 남북 언론은 상대방의 언론보도에 대해 그 진위여부가 문제가 될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판문점 선언 이행에 크게 역행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남측 언론의 대북 보도를 보면 취재나 확인절차 등의 방법이 막혀 있어 오보, 왜곡보도, 심지어 가짜뉴스 등의 진위를 신속하게 밝히거나 시정할 방법이 전혀 없다. 북측 언론의 남측에 대한 보도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향후 판문점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것을 밝히거나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이를 6·15언론본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치되는 남북언론중재기구는 남북 양측의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 정정이나 사과보도 등을 촉구할 시스템을 협의해 만들고 심의절차를 밟아 중재행위를 해나가겠다는 제안이다.

3. 남북언론중재기구의 현실성

언론계가 스스로 단순한 남북 언론교류를 넘어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고민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에 대해 북한 측 6·15언론분과위원회가 답을 내놓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북한 측이 입장을 정리하는 동안 남북언론중재기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점검해 남북 협의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 고려

할만한 몇 가지를 추린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남북언론중재기구 신설이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합법적으로 용인되는냐는 점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는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논의를 거쳐 남북언론중재기구의 설치와 북측과의 논의 및 의결 내용 실행이 국가보안법 제7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추진 및 실행 주체의 적합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6·15남측위원회의 지위이다. 이 단체는 지난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언론기관 공동합의문’을 이끌어냈다. 2005년에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켜 언론교류의 공식 창구를 확보했다. 이후 2009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민간 남북교류를 모두 중단하면서 남북 언론교류도 중단됐다가 다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6·15남측위원회의 성격 규정이다. 공식명칭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다. 위원회 규약 제1조에는 그 성격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정당, 종교,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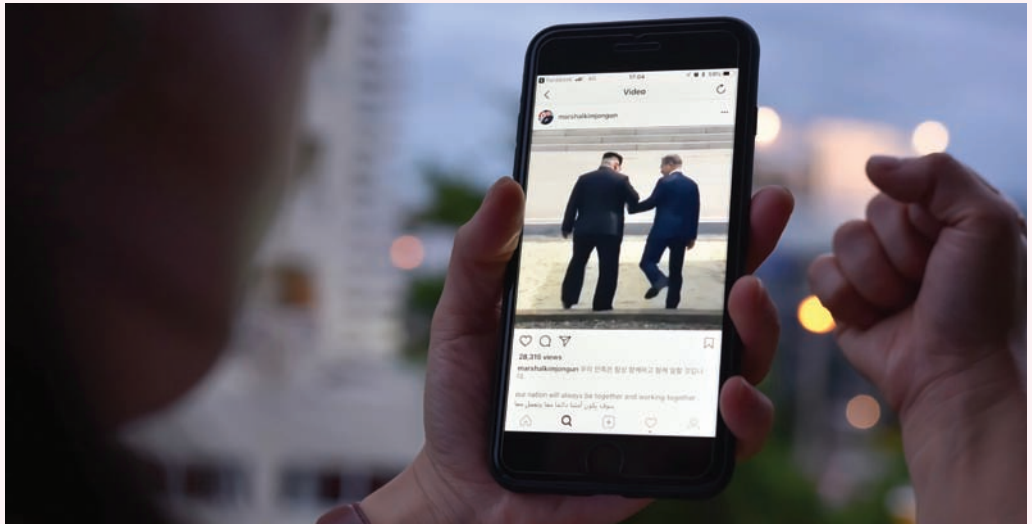
2. 6·15남측위원회는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행사와 각계각층 교류협력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조직하고 집행해 나간다.”

여기서 생각할 문제는 세 가지이다.

- ① 남북 언론의 왜곡보도와 중대한 오보를 방지하고 시정하는 남북공동의 행위를 ‘민간 교류협력사업’으로 규정할 것인가.
- ② 통일운동 연대조직인 6·15남측위원회의 분과인 언론본부가 언론사 보도를 심의하고 판단하여 결의사항을 준수토록 할 제도적 선결조건은 무엇이며 구비할 수 있는가.
- ③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기구는 남·북·미·중의 종전협정과 북한의 핵폐기 이후에 구축될 새로운 남북관계에서도 예전 그대로 최고의 기준과 준거로 통용될 것인가.

이밖에 남북언론중재기구의 설치 및 운영이 ‘언론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비상설 회의체로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언론회의>와 협력의 틀 속에서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이는 참여단체들이 중복돼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셋째, 남북 언론 중재의 비대칭성이다. 이 문제는 위에 언급한 남북언론중재의 시행주체와도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언론중재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기구를 법으로서 운용하고 있다(‘언



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정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는 전체 18개 중재부(서울중재부 8개, 지역중재부 10개)로 구성돼 있다. 각 중재부는 현직 부장판사를 비롯하여 언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 대학교수, 전직 언론인 등 5인으로 이뤄져 있고, 전체적으로는 90명의 중재위원이 조정 및 중재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에는 이런 언론중재 담당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언론본부는 6·15북측 언론분과위원회가 카운터파트로 존재한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6·15남측위원회가 남북언론중재를 맡는다면 북측에 파트너십은 존재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새로운 조직과 기구의 구성, 인적 자원의 확보와 예산 지원 등의 새로운 조직 구성 절차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와는 달리 언론중재위원회가 맡는다면 ‘북한중재부’의 추가설치와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로 추가조치가 간소한 이점이 있는 대신 북측이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갖추기가 부담스럽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남북공동언론중재위원회 구성은 상대적인 것이고, 그 결정권이 우리 측에 있기 보다는 북한에게 공이 넘어가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다음의 시나리오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① 북한이 <남북공동언론중재기구>의 설치와 참여를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 ② 새로운 언론중재 관련 기구의 신설이 아닌 현재 활동 중인 6·15북측 언론분과위원회에 이 사업을 맡긴다면?
- ③ 남북한 민간교류가 아닌 공식기관끼리의 협의기구 구성을 원한다면?
- ④ 북한 언론 보도에 관한 것은 대남 관련 부서가 담당토록 하고 우리 언론보도에 관한 것은 법적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활용하겠다며 이원적인 구성을 요구한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공동중재기구>의 정확한 의미이다. 남과 북이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

해 양측 동수의 중재위원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보도를 심의하고 조치를 취할 남과 북 각각의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위원회 간의 협력관계를 마련하는 것도 남북 공동언론중재위 구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 문제는 북측의 언론중재기구 유무를 넘어 북한 언론의 성격 자체와도 관련이 있다. 북한의 신문과 통신, 방송은 모두 당과 내각 또는 단체나 군 조직 등에서 발간하는 공식매체이다. 그동안 공동위원회에서 접촉해 온 것을 민간교류로 인정한다 해도 언론 보도내용을 정정하고 반론을 싣는 문제는 다를 수 있다. 북한의 언론인들은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보도선전의 의무를 지닌다(주체적 출판보도물 건설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 가자-로동신문 제 1면 2006. 12. 1.). 또 북한의 언론보도는 시스템 상으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통제되고 논조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의 언론보도란 중앙통제에 의해 허락된 북한 당국의 입장인데 남측 민간 교류협력위원회가 북한 당국의 결정에 따른 보도내용을 두고 지적과 개선요구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또 북한의 기밀법(1997 제정)은 제2조에서 “해당 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할 수 없는 중요사실”을 기밀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언론보도에 대해 남측 위원들이 증거자료나 진술을 요구할 경우 북측 위원들이 이에 응하거나 적극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이 외에도 언론의 책무와 본령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 보도내용을 판단하는 기준도 상이함이 클 것이다. 또 반론권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국가통제 언론과 언론을 통제하는 권력부서에 시정과 개선 요구를 한다는 것은 명확한 한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4. 남북언론중재의 대안과 과제

위에서 살핀 대로 남북공동언론중재기구의 구축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우리의 전략적 논의의 필요로 한다.

첫째는 남북한 양측의 언론 관련 법제가 크게 다르고 그 방향성 또한 서로 다른 곳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양측이 서로의 법제와 미디어 관련 이념을 충분히 이해하며 추진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물론 중재기구의 운영을 통해서 상호이해가 증진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상당한 수준의 상호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북 관계의 복잡성과 특수성, 민감함을 고려할 때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단일체제적 성격이 강한 북한 언론과 관계자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는 남측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이념적 지향과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남측 중재위원들이나 공동중재기구가 내놓은 결론이 우리 언론에 의해서 거부될 개연성도 크다. 그것을 강제할 권한이 6·15남측위원회에 주어질 수는 없고 선언적 권고나 해당 협회를 통한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남남 갈등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도 있다.

셋째, 북한이 공동기구를 원할지, 별도의 파트너를 지목하고 나올지 알 수 없지만 그에 따라 남측의 담당기구를 6·15남측위 언론본부로 할 것인지 언론중재위원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두 기구의 협업을 추진할 것인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현재는 남측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북측 당사자가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 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다. 제3자가 대신해 신청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신청인이 별개이다 보니 신청인이 보도내용에 대해 개별적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아 중재신청이 이뤄질 수가 없다. 6·15남측위원회가 제 3자로서 신청접수와 대리인으로서의 자격만 갖게 될지 직접 처리, 조사, 심의 자격까지 확보한 위원회가 될지 아직은 판단이 어렵다. 이 문제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6·15남측위원회는 창구로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와 집행기구로서 병존할 수도 있다. 또 남측 언론에게 결정사항을 실천하도록 강제할 경우 민간교류기구로서 역부족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라는 법적 기구의 힘이 필요하다. 또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공세에 견딜 수 있으려면 역시 법조인과 학자, 언론인이 두루 참여한 언론중재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본다. 따라서 남북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연다는 시대적 과제와 현실적 효용성을 파악해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되 우리 법제와 현실을 북한에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는 북측이 남측의 언론중재제도 이용을 원하되 북측에 반론권, 정정보도 청구권 등 제도나 관련 이념적 기반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북측 보도에 대한 중재행위를 거부할 수도 있다. 즉 남측만 일방적으로 언론중재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경우 어떤 접근을 펼 것인가도 미리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완전한 비대칭의 문제에 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타국 국적자가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언론중재제도가 없이 법적 소송에 의해서만 시정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외국인의 반론권 접근도 허용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8년 8월 까지 외국인 개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24건이다. 특허분쟁과 관련한 TV방송의 오보, 인터뷰 내용을 사실과 달리 보도함으로써 개인이 입은 피해, 사진의 조작과 부당한 편집으로 인한 명예의 실추 등과 관련해 외국기업과 개인 등이 신청해 조정된 사건들이다. 이 사건의 접수와 처리 사례를 준용한다면 북한 측이 우리 언론의 왜곡보도나 허위 기사에 의해 명백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처리할 근거는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적으로 피해 보상액의 청구가 있어 보상금액이 결정될 경우나 양측의 진술이 상이해 현장조사와 양측 대질이나 상세한 진술이 필요할 경우의 법적, 현실적 문제는 다른 외국인 신청 사건과 다를 수 있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남북 간에 만남이 필요하고 상호 간 교류의 필요성이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사 간 교류나 언론 유관 협회의 교류가 그렇게 시급하고 중대한 건 아니다. 과거에 펼쳐진 언론사나 단체의 경쟁적인 비즈니스나 특종보도 경쟁이 재연되는 것보다는 남-북-미-중이 종전과 평화로 함께 다가가는 만큼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해야 할 시점이다.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하며 항구적일 수 있는 사업에 힘을 모아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 간 언론중재 및 조정을 담당할 채널을 마련하는 건 양측 모두 실질적 이득이 있다. 지금까지의 북한 관련 보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니면 말고~”식의 오보가 난무하고 제재나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재나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즉각적인 사실확인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공식 뉴스보도에서 행해지는 북측의 격한 어조 역시 불신과 공포를 키우거나 그런 목적의 보도에 역이용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남북 언론의 오보 및 악의적인 왜곡을 방지하거나 처리하는 남북 언론중재기구의 설치는 상당히 주목할 과제이다.

언론중재기구의 설치는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이미 제안했고 언론중재위원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언론 관련 법제가 상이하고 언론의 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체제도 크게 달라 구체화하는 데 긴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이미 법적 기구로서 북한 이탈주민과 중북 논란에 관한 중재신청 사건들을 처리해 온 언론중재위원회가 존재하고, 6·15남측위원회가 북한 언론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떠나가며 상호이해를 넓힌다면 남북한 공동의 언론중재는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검토한 대로 중재기구의 효용성,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6·15남측 언론본부가 지원·보완해 남측이 먼저 언론중재 활동을 펴는 것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양측 연락사무소를 통해 당사자의 서면진



술이나 대리인의 출석으로 중재조정을 진행하는 건 외국인이나 외국 기관의 사례에 준해 언론중재위원회 관련법의 시행령이나 세칙을 보완하면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이제 우리는 대전환의 변곡점을 앞두고 있다. 우리 언론은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1995)> 전문에서 “우리는...화해와 신뢰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보다는 불신과 대결의 식을 조장함으로써 ‘반통일적 언론’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도 우리는 냉전저널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기득권 때문이고 그것을 타파할 결의와 노력이 부족해서다. 그 과정에서 희생된 건 민족이고 진실이었다. 우리의 저널리즘은 한반도의 현 상황을 보다 진취적이고 평화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보도는 이제는 ‘분쟁 보도’에서 ‘갈등해결 보도’로 프레임을 바꿀 때가 되었다. 이제 저널리즘은 한반도를 폭발 직전의 ‘분쟁지역’에서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화해국면 지역’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옳다. 이제라도 냉전의 선전·선동을 배제하고 ‘민족이라는 사실’과 ‘민족이라는 진실’을 깊이 고민해야만 한다. 민족문제의 구조, 남북대결의 본질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설명하는 전문적인 평화통일 저널리즘을 갖추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고의적이거나 무리한 일탈행위가 행해져 새 시대를 역행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남북 공동 또는 우리 단독으로도 언론이 민족의 화해 협력을 저해하는 적폐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 의지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가 냉전의 일부였음을 알아차리고 경계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구시대의 유물로, 적폐로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제7회 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사례 분석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기사를 위한 제언

김민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1. 들어가며

흔히 1992년 대선은 신문선거였다고 한다. 신문을 통해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었을 뿐 아니라 신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 언론사 회장이 YS가 낮은 대통령이면 자신은 밤의 대통령이라고 말했다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얘기가 떠돌아다니기도 했다. 한편, 1997년 대선을 앞두고는 TV토론이 도입되었다.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TV토론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뜨거웠다. 후보들 역시 TV토론을 자신의 정치적 매력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알리는 장으로 이용했다. 이 때문에 1997년 대선은 TV선거였다고 평가되곤 한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미디어 환경은 또 한 번 급변했다. TV 시대의 유권자는 주로 채점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인터넷 시대의 유권자는 스스로 후보의 정보를 찾아 나서고, 선거운동 전략을 짜기도 하는 유권자로 변화했다. 당시에 인터넷을 떠돌던 글 중 하나로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설득하기 어렵지만, 할머니와 어머니를 설득해 우리 편을 만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물론 2002년 대선공간에서 모든 유권자가 이 새로운 쌍방향 의사소통인 인터넷에 입문한 것은

아니었다. 20대와 30대가 인터넷의 시대를 가장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2002년 대선에서 강하게 나타난 세대균열에서 그들은 승리의 세대가 되었다. 또, 2010년 지방선거에서 20대의 투표율이 상승한 것은 SNS를 이용한 투표인증놀이가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중평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와 유권자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인데, 유권자와 후보가 대면으로 만나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다.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에서 미디어가 지니는 역할은 크고 중요하다. 이는 동시에 미디어가 왜곡되면 후보와 유권자 간의 의사소통도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민의가 왜곡된 선거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다양한 미디어 중 가장 오래되고 또 근간이 되는 인쇄매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인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총 15회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안건 중 총 91건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고, 후보자가 직접 시정을 요구한 12건 중 6건에 대해서도 반론보도문 게재와 주의사실 게재 등을 결정했다. 여기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공정한 선거기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원칙 및 기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선거기사를 모니터하고 심의규정 위반여부를 심의해 제재를 결정할 뿐 아니라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사항을 심의해 제재여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는 먼저 선거기사심의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선거기사 심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3가지다. 첫째는 공정성과 형평성, 둘째는 객관성 및 사실보도, 셋째는 정치적 중립성이다. 심의규정은 각 원칙을 위반하는 기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원칙 위반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공정성(제4조)을 위반한 기사는 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기사, ②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기사, ③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일방적, 의도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또는 기고, ④ 그밖에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로 규정하고 있다.

형평성(제5조)을 위반하는 선거기사는 다음과 같다. ①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 또는 사실과 다르게 변형한 기사, ②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

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기사. ③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로 규정하고 있다.

동 심의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차이가 그 단어가 지니는 철학적 의미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공정성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는 안 된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평성은 기사의 양적인 측면에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두 번째 원칙인 객관성 및 사실보도(제6조)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위반한 기사로 적시하고 있다. ①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기사. ②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실과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지 않은 기사. ③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을 취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기사. ④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기사. ⑤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기사. ⑥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거나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기사. ⑦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기사. ⑧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기사. ⑨ 앞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로 적시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제7조)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념,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비난 또는 비방하거나 미화하는 기사. ② 앞에 준하는 기사. 사실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제7조 제1호는 공정성과 관련된 제4조 제1호와 구분이 매우 모호하다. 제7회 지방선거 기사심의 자체심의결과를 보아도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건수는 총 68건에 달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결정된 기사는 단 1건도 없는 데, 이는 제4조 제1호와 제7조 제1호의 규정을 구분하기 매우 어려운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여론조사 보도(제8조), 인터뷰 및 인용기사(제9조), 사진 게재(제10조), 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11조), 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12조)에 대한 세부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조항은 모두 각 주제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가 ‘불공정한’ 경우인지를 적시하고 있다. 지면의 한계로 세부심의 기준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7회 지방선거기사 심의결과 위반사례가 나온 여론조사 보도기준(제8조), 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기준(제11조), 그리고 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기준(제12조)을 살펴보자.



여론조사 관련보도(제8조)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선거일 전 6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②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 ③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 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④ 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 전제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경우. ⑤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 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 ⑥ 앞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로 적시하고 있다.

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제11조)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기사를 게재한 경우. ② 선거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감정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닌 개인 또는 언론사 내·외부 필진의 의견(칼럼, 기고 등을 포함한다)을 게재한 경우. ③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한 경우. ④ 앞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제12조)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경우. ②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칭, 성명, 경

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④ 앞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들 조항은 '불공정한' 경우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규정이라기보다는 '공정성 및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세부적인 기준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예를 들어 12조인 광고제한 규정은 독립기준으로서 광고제한 규정의 위반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 및 형평성 원칙의 세부항목인 광고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시 말해 공정성 및 형평성의 위반이 대분류라고 한다면, 광고제한을 위반한 것은 공정성 및 형평성의 위반이라는 대분류 아래에 들어가야 하는 소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와 광고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독립적이고 수평적으로 취급하는 분석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3. 통계를 보는 심의현황

〈표 1〉은 최근 주요선거의 선거기사 심의 의결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두 가지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후보의 수가 많은 선거일수록 심의 안건수가 증가하고, 후보의 수가 적은 선거일수록 심의 안건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2017년 대선에서는 단 10건이 심의되었고,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76건이 심의된 것에 반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226건,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16건이 심의되었다.

둘째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총 226건이 심의된 것에 반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16건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자체심의회와 시정요구심의 모두 비슷한 비율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의 원

〈표 1〉 최근 주요선거 의결현황

선거명	운영기간	자체심의	시정요구심의	반론보도청구	합계
제6회 지선 (2014)	2014. 2. 3.~ 2014. 7. 4.(150일)	206	20	.	226
제20대 총선 (2016)	2015. 12. 14.~ 2016. 5. 13.(150일)	55	21	.	76
제19대 대선 (2017)	2017. 3. 20.~ 2017. 6. 8.(80일)	9	1	.	10
제7회 지선 (2018)	2018. 2. 12.~ 2018. 7. 13.(150일)	104	12	.	116

자료: 제7회 지방선거 기사심의회 결산자료.

칙이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미디어 전반에 있어서 선거보도의 문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댓글조작과 같이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인쇄매체의 보도왜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2〉는 자체심의 안건 총 104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나타내는데,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은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로 총 78건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후보자의 기고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10건이며, 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경우는 7건이다. 또, 여론조사보도를 불공정하게 한 경우는 5건이며, 광고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4건에 달한다. 그러나 앞의 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광고제한이나 후보자 기고제한, 여론조사보도의 불공정성이 모두 공정성 및 형평성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총 104건 중 97건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매체의 유형별 심의현황을 보면, 중앙매체는 중앙일간지 4건, 종합주간지 3건에 지나지 않는 것에 반해, 지역일간지는 6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역주간지로 35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상당수의 지방언론사들은 매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취재인력이 부족해 후보들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게재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언론사들이 선거기사를 수익창출의 모델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정 유형별로 보면, 가장 강한 제재인 경고결정문 게재는 1건이며, 그 다음으로 강한 주의사실 게재는 3건이다. 또, 경고가 38건, 주의가 39건이며, 권고 10건, 안내문조치 9건, 그리고 불문에 부친 경우도 4건에 이른다.

〈표 2〉 자체심의 의결현황

	계	위반유형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광고 제한	후보자 기고 제한	여론 조사 보도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조치	불문
일간 중앙	4	3			1				1	1	2		
신문 지역	62	44	5	3	7	3	1	2	22	28	3	5	1
종합주간지	3	1	2						1	1		1	
지역주간지	35	30		1	2	2		1	14	9	5	3	3
월간지	0												
뉴스통신	0												
총계	104	78 (75.0)	7 (6.7)	4 (3.8)	10 (9.6)	5 (4.8)	1 (1.0)	3 (2.9)	38 (36.5)	39 (37.5)	10 (9.6)	9 (8.7)	4 (3.8)

자료: 제7회 지방선거 기사심의위원회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이후 심의된 안건을 추가.¹⁾

1) 필자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대분류이고 광고제한이나, 후보자 기고제한, 여론조사보도 규정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아래에 들어가는 소분류라고 판단하지만, 여기서는 결산자료의 분류를 따름.

〈표 3〉 시정요구 결정현황

간별	매체명	결정내용					
		계	주의사실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	취하	기각
지역일간지	새전북신문	1			1		
	중부일보	1		1			
	경남매일	1	1				
종합주간지	주간경향	1				1	
지역주간지	거창군민신문	1		1			
	경남진주신문	1				1	
	괴산타임즈	1					1
	문경저널	1					1
	새목포일보	1			1		
	시사문경	1			1		
뉴스통신	안산타임즈	1					1
	연합뉴스	1					1
총계		12	1	2	3	2	4

자료: 제7회 지방선거 기사심의위원회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이후 심의된 안건 추가.

〈표 3〉은 후보가 시정요구한 기사에 대한 결정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총 12건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중 주의사실 게재 결정이 난 것은 1건,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난 것은 2건, 경고결정이 난 것은 3건이었다. 이에 반해 취하가 2건, 기각이 4건이었다. 시정요구건수가 자체심의 건수에 비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제재 결정비율도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체심의 결과 87.5%가 제재결정이 난 것과는 대조적인데, 이렇게 후보가 시정요구한 기사에 대한 제재 결정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선거기간 중 극도로 예민한 후보들이 기사에 대해 과잉반응을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심의결과 사례 분석

1) 자심73 및 자심91

주의사실게재 결정이 난 자심73과 경고결정문게재 결정이 난 자심91은 동일한 언론사의 유사 기사에 대한 결정이라는 면에서 심각성이 큰 사안에 대한 결정이었다.

경북일일신문은 4월 30일자 1면에서 「주낙영 예비후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는 기사를 실은 데 이어서, 5월 2일자 1면에서는 「자유한국당, 집안 꼴 잘 돼간다 경주시장 주낙영 예비후보 '방귀 뀌는' 출가 성낸다더니」라는 기사를 실었다. 또, 5월 8일자 1면에서는 「자유한국당, 엇갈린 우정 '갈

때까지 가보자' 주낙영 예비후보, 배우자, 자녀, 처가 땅에 왕국 건설(?)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5월 11일자에서는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처가 땅 도시계획도로 안 지나가는 곳 없다」는 기사를 실었다.

경북일일신문의 4건에 걸친 기사는 특정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인데, '배우자, 자녀, 처가 명의 땅에 부동산 왕국을 건설 하려했다', '방귀 핀 者が 성낸다더니', '속을 알 수 없는 양과 같다' 등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호의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실과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지 않은 기사에 해당한다. 또한 제6조 제7호의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기사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경북일일신문의 4건의 기사는 사실과 의견이 구분되지 않으며, 기사의 내용보다 제목이 크게 과장되었기 때문에 '객관성 및 사실보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봤다.

뿐만 아니라 제4조 제2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기사에 해당해 공정성 및 형평성의 원칙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주의사실계재를 결정했다.

주의사실계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북일일신문은 특정후보에 대한 비난 기사와 다른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지속적으로 실었고, 이 때문에 자심91로 다시 심의하기에 이른다. 경북일일신문은 5월 24일자 1면에서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동산 의혹」이라는 기사를 실은 데 이어서 5월 25일자 1면에서는 「주낙영 예비후보, 배우자 부동산 거래의혹 고구마 줄기 캐듯 나와(?)」를 실었고, 5월 28일자 1면에서는 다시 「해오름 동맹 포항·경주 시장후보 '땃땃한 者 누구(?)'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 배우자 부동산 기부 천사」라는 기사를 실었다.



동일한 의혹에 대해 3일에 걸쳐서 또 다시 1면에 대서특필한 데 이어서 6월 1일자 1면에서는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 배우자 부동산 거래 의혹, 조세포탈 '진실 게임' 시작」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6월 4일 1면에서는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누락 의심(?)」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한 후보에 대해서 총 5일에 걸쳐서 그것도 1면에 새로운 내용이 없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실은 것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 또는 사실과 다르게 변형한 기사에 해당해 형평성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북일일신문은 상대 후보인 최양식 후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사를 실었는데, 5월 29일 1면에서는 「경주시장 최양식 후보, 문화는 굴뚝 없는 경제」라는 기사를 실었고, 6월 1일 1면에서는 「도전 개척정신 미래 발전 희망 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최 후보의 커다란 캐리커처와 함께 실고 있다.

이렇게 경북일일신문은 주낙영 후보와 최양식 후보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실고 있는데, 이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기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4조 제2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기사에 해당해 공정성도 침해하고 있다.

특히 자심71을 통해 주의사실 게재를 하도록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신문은 보도태도를 시정하지 않고 특정후보에 대한 비난기사와 다른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반복적으로 1면에 실었기 때문에 경고결정문 게재를 결정했다. 경고결정문 게재가 해당 신문 기사의 변화를 가져올지 아



니면 똑같은 행태를 반복할지는 다음 선거기간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만일 다음 선거기간에도 동일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강하고 효과적인 제재의 도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2) 시심12

시심12는 김경수 후보가 경남매일의 4건의 기사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심의안건이다. 경남매일은 5월 28일자 1면에서 「김경수 부친 '뇌물공무원' 파문」을 게재한 데 이어서, 5월 30일자 1면에서는 「김경수 부친 연루 국유지사기단 수법 교활」, 6월 7일자 1면에서는 「국군 장교 김경수 외숙 '월북」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또한, 6월 12일자 1면에서는 「태호가 경수 잡았다...여론조사 1.5% 앞서」라는 기사를 실었다.

시정요구인이 주장한 바처럼 5월 28일자, 5월 30일자, 그리고 6월 7일자는 30여 년이 지난 후보의 가족의 문제를 기사화한 것으로 후보의 자질검증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호의 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기사에 해당해 객관성 및 사실보도의 원칙을 위반한다.

또한 6월 12일자 1면 「태호가 경수 잡았다...여론조사 1.5% 앞서」라는 기사는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 김태호 후보가 1등임을 단정적으로 적시했다. 이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호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기사에 해당해 여론조사결과를 불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경남매일은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직계존속을 비방하는 기사를 써서 객관성 및 사실보도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해당 여론조사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6개 여론조사에서는 모두 시정요구인의 지지도가 상대후보를 앞섰던 상황에서,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여론조사를 불공정하게 보도했다. 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 심의건 중 유일하게 주의사실 게재를 의결했다.

5. 마무리 및 제언

2014년 지선에서 226건이 심의된 것에 반해, 2018년 지선에서는 심의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116건에 그쳤다. 이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기사가 과거의 기사보다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엄격한 판단이 기여한

바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기사의 더 높은 질적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시된 공정성 규정과 정치적 중립성 규정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제5조 제1호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기사는 공정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호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념,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비난 또는 비방하거나 미화하는 기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두 경우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반 기사에서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구분이 명확하다. 일반 기사에서 공정성은 어느 일방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치적 중립성은 특히 정치에 관련된 기사에서 특정 세력에게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기사를 써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선거기사에서는 모든 기사가 정치기사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성된 기사는 공정성에 위반하는 기사이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기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7회 지방선거 기사심의 심의결과를 보아도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건수는 총 68건에 달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결정이 난 기사가 단 1건도 없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은 미국과 같이 언론사의 이름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기사 심의원칙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는 보다 깊은 천착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여론조사 보도(제8조), 인터뷰 및 인용기사(제9조), 사진계재(제10조), 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제11조), 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12조)에 대한 세부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이 모두 ‘불공정한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이는 제8조~제12조가 모두 ‘공정성’의 원칙 아래에 들어가는 세부 항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면 위반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도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보도, 기고제한, 광고제한을 병렬적으로 나열해서는 안 되고, 공정성 및 형평성의 원칙 위반 중 여론조사보도 공정성 위반, 혹은 공정성 및 형평성의 원칙 위반 중 광고제한 위반과 같이 공정성 및 형평성의 원칙을 대분류로 두고 그 아래에 소분류를 두는 방식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자심73은 지속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반복적으로 1면에 올렸기 때문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주의사실 게재를 결정했다. 그러나 주의사실을 게재하고 난 이후에도 동신문은 멈추지 않고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반복적으로 1면에 싣고,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기사를 실었다. 이 때문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심 91로 다시 심의해 경고결정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복수의 제재를 하고 난 이후에도 보도 행태를 시정하지 않고 불공정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돌이켜 보면, 현직인 후보들은 본인이 직접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자치단체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방식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가상의 예를 들어, 현직으로 재임하면서 스마트시티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었고 어떤 정책도 실시한 바가 없는데, 다른 후보가 스마트시티 공약을 들고 나왔다고 하자. 이때 현직후보는 자신도 스마트시티 공약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로 하여금 〇〇억원을 투자해 앞으로 5년 이내에 스마트시티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도록 시킨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현직인 후보가 발표하는 정책은 기사화 되지 않지만, 자치단체(특히 광역단체)가 발표하는 정책은 언론에 보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자치단체가 행정인력을 동원해 정책을 발표하면 상대후보의 공약보다 훨씬 구체성이 있어서 상대후보의 공약이 김빠지게 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장이 업무정지 된 상태에서 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현역인 후보가 높은 프리미엄을 누리는 불공정경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선거법에서 단체장이 후보나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치단체는 선거운동기간(혹은 예비후보등록 가능 기간 이후부터는)에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모노클의 성공과 반스앤노블의 추락

손관승 전 언론중재위원

대세를 따라야 하는 것일까? 혹은 고유의 전략을 고수하여야 할까? 산업기술의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에 역행해 성공하는 곳도 있다. 이탈리아가 본고향인 몰스킨 수첩, 독일이 자랑하는 파버 카스텔 같은 문구류가 그 좋은 예이다. 이 상품들은 디지털 문명이 발달할수록 편리함은 늘어나는 반면 불안감과 조바심을 떨치기 힘든 현대인들의 심리를 파고든 상품이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디지털 문명의 흐름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도시의 직장인들은 심리적인 가랑이가 찢어지는 기분을 느끼고, 늘 허덕거린다. 디지털의 속성인 '몰개성'에 지친 사람들이 아날로그적인 분야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 싶은 것이다.

이런 틈을 적절히 잘 파고든 미디어가 바로 영국에서 발간되는 잡지 <모노클(Monocle)>이다. 종이로 만든 잡지와 책은 사양산업이라는 대부분의 분석과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번성하고 있다. 영국 국경을 넘어 급속도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우리의 10대 시장이라고 하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독일, 홍콩,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입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밀라노에서 보고타, 파리에서 방콕에 이르기까지 모두 30여 명에 이르는 광범위한 특파원 취재망을 확보하고 있지요. 일본 도쿄, 홍콩, 뉴욕, 캐나다의 토론토, 스위스의 취리히에도 해외지사가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하던 칼럼니스트이자 캐나다의 매거진 창간자였던 타일러 버닝이 동료들과 함께 2007년 런던에서 창간한 모노클의 현주소다. 시장의 범위를 자국 내에만 한정하지 않는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한 독자들이 주된 고객층이다. 현재 모노클은 런던의 미도리(Midori) 하우스에 있는 본사에서 연간 10회의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고, 매회 1만 8천 명의 정기구독자에게 8만 1천 권 이상의 부수를 판매하고 있다. 모노클은 비정기 독자까지 합해 발간부수가 15만 부를 상회한다고 말한다.

연간 구독료는 150달러, 중요한 것은 단순한 판매부수가 아니다. 부가가치다. 이 매거진은 마치 고급 사교클럽이나 헬스클럽에 등록된 회원들의 분위기를 풍긴다. 최상급 디자인과 사진감각을 살린,

일종의 잡지의 명품(名品)화 전략이라고 할까. 대표적인 사양산업인 종이산업과 잡지 업종에서 매우 특이한 사례다.

“포린 폴리시와 배너티 페어의 만남이다.”

미국 CBC 뉴스의 기자인 해리 포스텔이 묘사한 모노클의 정체성이다.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란 격월간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이며,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국제 이슈 전문지 양대 산맥이다. 반면에 ‘배너티 페어(Vanity Fair)’란 디자인과 패션을 다루는 잡지인데, 나중에 ‘보그와 합병되었다. 즉 정통 저널리즘과 시각적인 것을 우선하는 대중잡지를 절묘하게 혼합했다는 뜻이다. 모노클은 국제 이슈를 주축으로 비즈니스, 문화, 디자인, 패션에 관해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앤드류 턱이 맡고 있는 편집 감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요즘 독자들의 고급 취향을 반영한 것이다.

2018년 3월호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즈음하여 제임스 챔버스 <모노클> 매거진 홍콩 지국장이 “내가 만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한국”이라는 특집 기사를 다뤄 한국에서도 이 잡지 이름이 알려졌다.

모노클은 연간 10회의 매거진을 발간하는 대신 그 사이를 두 개의 계절별 간행물로 대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첫째는 ‘전망(The Forecast)’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 12월부터 12/1월호(통합본)와 2월호 사이에 나왔는데, 제목 그대로 해당 년도의 정치, 경제, 국제적인 주요 이슈를 다룬다. 두 번째는 ‘도피(The Escapist)’라는 것으로 2017년 8월부터 ‘The Summer Weekly’ 라는 이름으로 3개의 섹션으로 이뤄진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글로벌 문제와 함께 비즈니스 현안들을 정리한 여름철 비즈니스 리더들을 위한 계절 매거진이다. 특이한 것은 짧은 형식의 글이 아닌 하나의 이슈를 길게 다룬 ‘Longform Journalism’이었다는 사실이다. 가벼움과 정반대인 깊이 있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이것을 주축으로 하여 세계의 주요 도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여행 가이드 시리즈(Travel Guide Series)’를 발간하고 있다. 모노클의 또 다른 승부처다. 편집은 런던 본사에서 하지만 인쇄는 베를린에 있는 저명한 ‘게슈탈텐(Gestalten)’에서 찍고 있다.

모노클은 글로벌 이슈와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매거진, 그리고 24시간 라디오 방송, 온라인 웹사이트, 그리고 모노클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한 상품 판매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 중이다. 런던 본사 편집실과 별도로 메릴리본(Marylebone)에 있는 스토어는 서점과 카페가 결합한 형태로서 브랜드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와 문구류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커피와 브런치까지 판매한다. 새로운 독자를 유인하는 전략과 멀티상품 판매 전략의 결합이다. 명실공히 아날로그 미디어의 부활이다. 때문에 요즘의 출판과 잡지, 미디어의 결합상품, 트렌드, 생존 전략을 알고자 하는 이들은 성지순례하듯 이곳을 찾는다.

점차 명성이 높아지자 2014년 9월 모노클을 창간한 타일러 버닝은 일본의 출판사 넷케이에 소수 지분을 매각하였다. 넷케이의 투자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노클의 가치는 약 1억 1,5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도쿄에 모노클 숍과 카페가 있는 이유다.

모노클은 부유한 지식인들을 위한 지적 충족인가, 아니면 허영심을 자극하는 것인가? 런던이나 도쿄의 모노클 카페에 가면 스스로 던지는 의문이다. 칼럼니스트 존 파인은 “소수의 행운아를 빼고는 모두가 비판하는 허영심 놀이”를 벌이고 있다고 잡지 산업의 성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였다. 명품을 추구하는 요즘 사회의 특성이 매거진과 종이산업에서도 허영심으로 나타난다는 지적도 없지는 않다. 반면에 디지털 시대일수록 아날로그적 경험, 즉 감성과 관계를 적절히 이어주는 상품과 산업이 더 번성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디자인과 편집이라는 작은 차이가 성공과 실패라는 극과 극으로 갈린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화적 충격은 오래전 미국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있었다. 미국 최대의 서점체인 반스앤노블(Barnes & Noble's)에 가면 스타벅스가 있고, 그곳에서 진한 커피의 향기와 책을 넘기는 종이의 질감, 그 상이한 두 가지의 결합 속에서 미국의 문화적 힘을 확인했었다. 공간의 힘에 대해 눈을 뜨고 자각하는 계기였다.

“이곳은 책을 파는 곳일까? 혹은 커피를 파는 곳일까, 분위기를 파는 곳일까? 아니면 미국의 지식과 가치를 파는 곳일까?”

특히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대학을 방문하면 상당수 구내 서점에서는 반스앤노블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다. 이방인을 부럽게 만들고 전성기를 구가하던 반스앤노블은, 이제는 전자상거래 공룡기업 아마존의 등장으로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를 위기에 처해 있다. 2018년 3월에 발표한 실적 보고에 따르면 이 회사의 매출은 전년보다 5.3% 떨어진 1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손실은 6,350만 달러에 이르렀다.

회사의 표현 그대로 ‘전략적 전환 계획(Strategic turnaround plan)’이 절실하였다. 급기야 2018년 7월 이사회는 파르네로스(Parneros) CEO에게 해고처분 통고를 하였고, 이에 항의해 파르네로스가 반스앤노블의 대주주인 리지오 회장에 대한 소송에 돌입하는 자중지란 사태에 이르렀다.

이를 바라보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다. 책과 매거진, 그리고 종이로 만들어진 지식상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서점은 곧 훌륭한 여행지였으며 성장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머문 동안 체험했던 낯선 문화, 새로운 저자와 책 읽는 분위기를 사랑했었기에 더욱 안타까운 것이다. 이들은 지식의 향기, 창의적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대한 우려를 느끼고 있다.

미국 와튼스쿨 교수들의 분석에 따르면 반스앤노블은 80~90년대 미국의 대형 쇼핑타운이 생기면서 성장했다. 쇼핑몰이라는 거대한 상가 집합체와 서점의 결합이었다. 1990년대 중반 아마존이 나타나면서 온라인 서점이 본격적으로 성장했지만, 오프라인 대형 서점들은 이를 약간의 위협일 뿐 본격적인 도전은 아니라고 보았다. 세월이 흘러 온라인 서점이 급성장했고, 오프라인 서점 시장에 빨간불

이 들어왔다. 시장 내 2위 서점 사업자였던 보더스가 2011년 파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보더스의 파산은 미국 서점업계의 선두주자인 반스앤노블이 온라인과 디지털 사업에 빠르게 투자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상황은 늦었다. 시장의 주도권은 이미 반스앤노블이 아닌 아마존에 넘어간 뒤였다. 반스앤노블의 전자책 ‘눅이리더(Nook e-reader)’는 아마존의 킨들(Kindle)에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참패였다.

아마존은 전자책 시장뿐 아니라 출판·유통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하였고, 독자들 역시 반스앤노블에서 멀어졌다. 700개가 넘는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633개로 줄어들었다. 당연히 매출과 이익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백화점들이 전자상거래에 밀려 하나둘 문을 닫는 것처럼, 유명 서점들도 존폐의 위기에 빠졌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원인은 무엇인가?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나 미디어 전문가들에게는 좋은 주제다. 미국을 대표하는 MBA 코스 가운데 하나인 와튼스쿨 교수들의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마도 반스앤노블은 20년 후에 추억거리가 될 것이고, 사람들은 좋았던 옛 시절을 기억하겠지만, 반스앤노블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 죽어야 한다.” (Peter Fader 교수)

“반스앤노블은 스타벅스 커피를 파는 공공도서관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파는 곳에 들어가 둘러보고, 커피를 마시고, 다시 걸어 나간다.” (Ray Wimer 교수)

“반스앤노블은 점점 더 자연사 박물관의 천장에 매달려 있는 공룡과 닮아 가고 있다.” (Mark Cohen 콜럼비아 대학원 교수)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문제는 반스앤노블이 결코 최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Barbara Kahn 교수)

원인 진단은 비슷하지만 해결 전망은 모두 다르다. 다만 전문가들의 한 가지 공통된 관점은 “어떠한 전략 방향에서든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같은 메시지를 담아 저명한 마케팅 전문가인 바바라 칸 교수는 《The Shopping Revolution》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반스앤노블의 추락과 모노클의 성공을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점차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가 고객의 핵심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세대의 특성을 파악하지 않으면 어렵다. 극단적인 게임 체인징(game-changing) 시대에 지배권을 쥐는 자만이 살아남고 중간은 살아남기 힘들다. 무엇이든 극단적으로 뛰어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다. 디지털이건 아날로그건 마찬가지다. 📖



모바일, 수백년 중국인들의 뉴스 소비 습관을 송두리째 바꾸다

이승환 블록체인미디어 코인니스 CEO

2009년 베이징 시내, 대학교 교문, 지하철 역 앞, 사거리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어김 없이 다양한 종류의 신문과 잡지를 판매하는 가판대가 들어서 있다. 중국 공산당 관영 신문부터, 뉴욕 패션 잡지 중국어 판까지, 수십 종류의 인쇄물들이 가판을 가득 채우고 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책상 위에도 어김없이 신문이나 중국판 리더스 다이제스트 <두저(读者, 독자)>, 청년들의 투고로 만들어지는 <청년원자이(青年文摘, 청년원적)> 과 같은 잡지가 놓여 있다. 전세계 미디어들이 인터넷 시대를 넘어 모바일 시대에서 새롭게 나타난 기회를 탐색하던 그때, 중국인들의 손에는 여전히 신문과 잡지가 들려 있었다.

실제로 2009년은 중국 미디어 출판 업계에 있어 기념비적인 해였다. 시장 규모가 사상 처음으

로 1조 위안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당시 중국 전체 GDP의 0.9%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세부 산업을 들여다보면, 신문 발행 시장의 규모가 646억 위안으로, 인쇄 산업(제지, 인쇄 등)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당시 중국에는 전국적으로 1,937개의 신문 미디어가 등록되어 있었으며, 연 평균 2.1억 부의 신문이 발행됐다. 전년 대비 280억 위안(약 4조 5,000억 원) 규모 이상의 시장이 새롭게 생겨났다.

반면 같은 시간 글로벌 전통 인쇄 미디어들은 인터넷 미디어들의 거센 도전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2009년 미국 내 상위 507개 신문사의 발행량이 급감했으며, 적자 운영이 만연했다. 당시 세계 신문협회(WAN-IFRA, World Association of

Newspapers and Publishers)에 따르면, 프랑스의 인구 1,000명 당 신문 구입량이 154부로 감소했다. 영국에서는 1,000여 명의 신문 종사자가 해고를 당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아사히 신문 역시 창간 이래 130년 만에 첫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물론 중국의 전통 신문들 역시 인터넷 모바일 미디어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위협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디어 산업 전체의 파이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 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중국 전통 신문사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꾸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가격이 저렴한 신문과 잡지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취미 및 여가 수단 중 하나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중국 당국의 전통 미디어에 대한 지원과 새로운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견제가 방파제가 됐다. 당시 전세계 미디어 산업 종사자들 눈에 비쳐진 중국은 전통 인쇄 미디어들의 ‘최후의 보루’였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모바일, 즉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완전히 뒤바뀌었다. 스마트폰이 중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 깊숙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뉴스 앱들은 전세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파괴적인 속도로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일명 ‘모바일 혁명’에 적응하지 못한 미디어들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실제로 모바일 서비스 보급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5년 하반기 중국의 신문 판매량은 27.29% 급감했다. 반면 2016년 중국의 모바일 뉴스앱 시장은 전년 대비 150% 성장한 161억 위안을 기록했다(중국 시장 조사 기관 아이리서치). 같은 해 뉴스 앱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34.8% 증가한 6억 2,000만 명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뉴스 앱들의 서비스 침투율이 급상승했다. 서비스 침투율이란 전체 플랫폼(모바일) 이용자 대비 특정 서비스 혹은 브랜드 이용자의 비율을 말한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중국의 모바일 뉴스 앱들의 침투율은 45%에서 55.5%로 1년 사이에 10% 가까이 상승했다. 불과 1~2년만에 나타난 급격한 변화였다.

단순히 시장의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었다. 모바일은 중국인들의 뉴스 소비 습관 자체를 바꿔 놓았다.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평균 5개 이상의 뉴스 앱을 설치 및 사용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현재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뉴스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놓고 뉴스를 소비하는 데 익숙하다. 대부분의 뉴스가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 소수의 대형 플랫폼을 통해 소비되는 한국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인기 앱 Top100 순위(랭키닷컴 추산)에 뉴스 앱은 단 한개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반면 중국에서는 9개의 뉴스 앱(텐센트 뉴스(腾讯新闻), 진르터우타오(今日头条), 왕이뉴스(网易新闻), 소후뉴스(搜狐新闻), 취터우타오(趣头条), 신랑뉴스(新浪新闻), 텐텐콰이바오(天天快报), 이디엔즈윈(一点资讯) 순)이 Top100 순위에 들었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10개 중 1개는 뉴스 앱인 셈이다. 해당 9개 뉴스 앱의 2018년 7월 기준 액티브 유저(Active user) 수의 총합은 약 8억 5,000만 명에 달한다.

다양성도 돋보인다. 국내 뉴스 앱의 경우 조선일보, 중앙일보, SBS, KBS 등 전통 미디어들의 앱 서비스가 상위권을 독점하고 있다. 사이사이에 보이는 뉴스 큐레이션 앱 역시 대부분이 전통 미디어 뉴스를 단순히 카테고리 별로 추천해 주는 서비

스가 주를 이룬다. 반면 중국은 현재 다운로드 수 100만 명 이상의 뉴스 앱이 각 세부 분야마다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제 막 산업이 생겨난 블록체인 분야가 대표적인 예다. 2018년 상반기 기준 현재 중국에는 다운로드 수 100만 이상, 1일 액티브 유저 20만 명 이상인 블록체인 전문 뉴스 앱이 4개(진서차이징(金色财经), 비스제(币世界), 바비티(巴比特), 렌더더(链得得)) 이상 등장했다. 모두 1년 내 새롭게 만들어진 서비스다. 반면 블록체인 열풍이 세계에서 가장 거세게 불고 있다는 한국에서는 아직 일정 규모 이상의 블록체인 뉴스 앱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 미디어들이 웹 형식, 다시 말해 네이버 검색 노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모바일 최적화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모바일 뉴스 앱 시장이 부진한 원인을 단순히 시장 규모에서만 찾을 수 없는 이유다. 2018년 상반기 기준 중국 앱스토어에 등록된 뉴스 앱은 1만 5,000개에 육박한다. 말 그대로 뉴스 앱들의 춘추전국시대다.

모바일 뉴스 시장의 다양성 부재는 단순히 '단조로운 시장', '이용자들의 선택권 박탈' 등의 일차원적인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전문적인 뉴스 앱의 성공 사례는 자본의 활발한 투자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미디어 업계 전반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1년 창업한 IT 미디어 36커(36氦)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5월까지 6차례의 투자를 유치했다. 현재 50억 위안(약 8110억원)의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4년차 미디어 스타트업이 무려 8,000억 원이 넘는 몸값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36커보다 늦게 창업한 IT 미디어 후슈왕(虎嗅网) 역시 벤처 캐피탈과 현지 인터넷 기업들로부터 3차례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지난 2015년 증시 상장에 성공했다. 두 미디어

모두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다양한 테크 뉴스를 제공하면서 수천만 명의 젊은 중국 독자들을 끌어 모았다. 과거 인쇄 미디어 시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성장 속도와 자금 조달 능력이다. 중국 시장 조사 기관 아이리서치(Iresearch)에 따르면, 지난 2015년과 2016년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중국 뉴스 앱은 각각 127개, 129개다. 매년 조 단위의 벤처 투자금이 뉴스 미디어 스타트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뉴스 앱 투자 성공 사례는 1인 미디어 등 차세대 미디어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현지 미디어 소후(搜狐)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4~2017년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1인 뉴스 미디어는 194개에 달한다. 이중 1억 위안(약 17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1인 뉴스 미디어가 16개, 1,000만 위안(약 17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1인 미디어가 92개에 달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뉴스 미디어 스타트업이 벤처 캐피탈,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대표적인 사례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투자는 혁신으로 이어진다. 지난 2~3년 중국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력을 갖춘 새로운 미디어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인공지능 기반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진르터우타오(今日头条)다. 올해로 창업 6년차인 뉴스 앱 진르터우타오의 이용자 수는 7억 명에 육박한다. 매일 7천8백만 명이 이곳에 들어와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단다. 생산되는 글의 양도 어마어마하다. 30만 개가 넘는 미디어, 기업, 기관, 1인 미디어들이 매일 수십만 개의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다. 진르터우타오의 기업가치는 약 15조 원으로 평가 받는다(2018년 1월 기준). 실제로 진르터우타오는 창업 몇 년 만에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으로 PC 시대의 인터넷 뉴스를 장악했던 바이두의 뉴스 분야 광고 수익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시대에 완전히 최적화된 뉴스 앱 진르터우타오의 등장에 바이두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한다.

비결은 무엇일까? 진르터우타오의 걸모습은 미디어 플랫폼이지만 사실상 인공지능 기술 업체다. 실제로 1,300여 명의 직원 중 약 800명이 엔지니어다. 데스크에서 콘텐츠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미디어나 포털사이트와 달리 진르터우타오는 대부분의 뉴스 분류를 인공지능에 의존한다. 진르터우타오가 독자 개발한 추천 알고리즘은 먼저 이용자들을 SNS 이용 습관, 관심사, 직업, 성별, 지역 등으로 분류한다. 그 다음 어떤 콘텐츠를 주로 클릭하는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뉴스 추천의 정확도를 높여 나간다. 진르터우타오의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취향을 업데이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0초다.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취향 분석이 더욱 정교해지는 구조다.

아울러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양질의 정보를 선별하는 역할도 인공지능이 수행한다. 인공지능은 1차적으로 민감한 내용, 저품질 콘텐츠, 광고성 정보를 걸러 낸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취향에 맞게 콘텐츠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선별 작업을 진행한다. 약 20분만에 모든 과정이 끝난다. 진르터우타오의 또 다른 혁신은 콘텐츠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데 있다. 진르터우타오의 가장 큰 특징은 메이저 미디어의 뉴스 기사, 1인 미디어, 파워 블로거, 동영상, Q&A 등 다양한 성격의 콘텐츠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용자들에게 추천한다는 것이다. 인민일보의 기사라고 해서 더 위에 나오거나, 먼저 추천되지 않는다. 1인 미디어의 콘텐츠라도 이용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가장 먼저 추천된다. 반면 바이두의 경우 뉴스면 뉴스, 블로그면 블로그, 영상이면 영상, 정해진 카테고리의 전형적인 콘텐츠만을 보여준다. 진르터우타오의 슬로건이 “당신이 관심이 있는 게 바로 헤드라인이다”인 이유다.

중국의 모바일 뉴스 앱들의 진화는 지금도 계속되



고 있다. 올해로 창업 1년차인 블록체인 미디어 비스제(币世界)의 사례를 살펴보자. 비스제의 130명 직원 중 기사를 쓰는 기자는 30명에 불과하다. 60~70명이 개발자와 빅데이터 전문가다. 이들은 자체 제작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전세계에서 실시간 발생하는 블록체인 관련 데이터와 뉴스를 포착, 24시간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달한다.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모아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역할을 한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최적화된 뉴스 정보 앱이다. 서비스가 시작된 지 불과 1년밖에 안됐지만, 비스제의 독자수는 200만 명에 육박한다. 수차례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도 수백억 원을 넘어섰다. 비스제의 창업자 탄첸후이(譚晨輝)는 “독자가 자신을 봐주기를 원하는 미디어는 살아남을 수 없다. 독자가 원하는 것을 다양한 기술을 통해 효과적으로 눈 앞에 펼쳐 놓는 미디어만이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기사를 읽고 추천할 때마다 압

호화폐로 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미디어, 인공지능으로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뉴스 요약 서비스 등 모바일 뉴스 앱들의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뉴스 앱들은 새로운 경쟁자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다양성을 인정하는 뉴스 앱 소비 문화, 성공 사례의 등장에 따른 활발한 자본 투자, 그리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기술로 무장하고 있는 뉴스 앱들까지 3박자 조화가 중국의 뉴스 앱 생태계를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미디어들이 네이버, 다음 등 검색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 문화가 야기한 다양성의 부재에 갇혀 있는 사이 한때 ‘공산당의 나팔수’ 정도로 여겨져 온 중국 미디어들은 저 멀리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0년 전 만해도 신문과 잡지의 천국이었던 중국에서 지난 몇 년, 뉴스 앱 시장이 급격한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이 바로 ‘점프 이론’

이다. 점프 이론은 보통 중국의 빠른 모바일 결제 혁명을 설명할 때 많이 등장하곤 한다. 중국이 신용카드를 거치지 않고 현금에서 바로 모바일로 넘어온 덕에, 모바일 결제의 보급 및 발전 속도가 다른 국가들을 압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모바일 결제가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모바일 뉴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인터넷 미디어의 발전이 느렸다. 인터넷 미디어 생태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바일 시대가 찾아왔다. 이에 인터넷 미디어 기득권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소비 습관이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바일 미디어 업체들이 빠르게 시장에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문 정기구독률은 1998년 64.5%에서, 2010년 29%로 10년 새 절반 이상 급감했다. 2008년~2010년 사이 8% 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반면 2009년 중국의 신문 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하며, 총 신문 발행량 439억 부, 1,969억 장을 기록했다. 이 기간 중국 신

문사들이 벌어들인 돈(영업이익)은 70억 4,000만 위안을 기록했다. 같은 해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은 총 1,937종으로, 한 신문당 연간 평균 발행 부수는 2.1억 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뉴스 소비의 주도권이 인터넷으로 대부분 넘어갔던 2010년, 중국에서는 여전히 종이 신문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80년대 개혁 개방을 겪으면서 중국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동시에 물가도 빠르게 상승하면서 일반 서민이 즐길 수 있는 오락, 취미 수단의 가격도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 제일 저렴한 신문, 잡지 등 인쇄 미디어가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오락, 취미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중국의 대표적인 대중 잡지인 <독자(读者)>의 경우 2009년 기준 판매 가격은 3위안(약 470원)이었다. 이는 당시 중국에서 판매되던 오리온 초코파이 1개의 판매 가격이다. 수필, 에세이, 단편소설 등으로 구성된 <독자>는 1달에 2번 발행됐는데, 당시 월간 판매량이 1,000만 부에 육박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청소년 문학 잡지인 <청년문적>의 2010년 가격 역시 4위안(약 600원)에 불과했다. 반면 당시 보편적인 인터



넷 정액 요금(ADSL 1MB 기준)은 1년에 1,680위안(약 27만 5,000원)이었으며, 중국 1위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의 스마트폰 3G 표준 요금제 정액 요금제(데이터 제공량 750MB 기준)의 가격은 한 달 기준 226위안(약 3만 8,000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제 수준이 가장 높은 상하이 시의 월 최저임금이 1,120위안(18만 3,000원), 대출자 평균 임금이 2,153위안(약 35만 3,0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당시 인터넷 가격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이처럼 저렴한 신문과 잡지의 가격은 중국의 인쇄 미디어들이 '지식 소비 수단'이 아닌 '취미 및 오락 수단'의 지위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

또한 종이 신문, 즉 전통 미디어들의 패권적 지위 역시 인터넷 미디어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발전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활자를 선호하는 중국인들에게 종이 신문은 '사라질 수 없는' 매체로 여겨졌


다. 이에 종이 신문들은 상대적으로 인터넷으로의 저변 확대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중국 당국 역시 여론 관리를 위해 신규 인터넷 미디어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제한했다. 무분별한 서구 사상의 유입을 막기 위한 구글,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해외 검색 사이트, 미디어의 접속을 차단한 점도 인터넷 미디어 시장의 성장을 막는 요인이었다. 이처럼 폐쇄적인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바이두(百度), 시나(新浪), 소후(搜狐)와 같은 포털 사이트들은 뉴스 서비스보다는 게임, 영상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에 집중했다. 자연스럽게 중국 인터넷 뉴스 미디어 생태계의 질적 성장은 다음 세대 주자들의 임무로 미뤄졌다.

중국의 모바일 시대는 인터넷 미디어 생태계가 완전히 자리잡기 전 마치 도둑처럼 다가왔다. 인터넷 시대를 촌촌하게 장악한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들의 헤게모니가 그대로 모바일 시대로 세습된 우리나라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진르투타오와 같은 새로운 모바일 주자들, 미디어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있었던 것이다. 전세계 경제 및 금융 속보를 24시간 라이브로 전달한 화얼제젠원(华尔街见闻), 지식 기반 공유의 클라우드 미디어 서비스 즈후르바오(知乎日报), 유명한 중심 뉴스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제몐(界面) 등 새로운 뉴스 서비스들이 파고들며 미디어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기존 인터넷 포털들도 재빨리 뉴스 전문 앱을 출시하며 시장의 파이를 키웠다. 시장 조사 전문 업체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오는 2019년 중국의 모바일 뉴스 앱 업체들의 총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34.9% 증가한 450.7억 위안(약 7조 5,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동시에 SNS 플랫폼 위챗(微信),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진르투타오 등에서 활동하는 1인 뉴스 미디어도 약 30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해당 시장 조사 기관은 “기존 대형 포털 중심의 뉴스 앱, 전통 미디어, 인터넷 미디어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아우르는 큐레이션

서비스, 사회, 산업 각 분야의 전문 뉴스 앱 그리고 풀뿌리로 행동하는 1인 뉴스 미디어로 구성된 모바일 뉴스 생태계가 완성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인터넷 미디어 산업의 더딘 발전과 이로 인해 생긴 시장 공간이 지금 중국의 모바일 뉴스 생태계에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커다란 기회로 다가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충분한 인터넷 미디어 성숙기를 보낸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네이버 등 소수 대형 플랫폼의 뉴스 기득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모바일 뉴스 시장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하나다.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 습관에서 벗어나 각 분야의 전문적인 뉴스 미디어들을 소비하는 것, 모바일 뉴스 앱의 성공사례가 나오고 점점 더 많은 투자자본이 이에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사용해 볼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이름의 인격 살해, 그 개념과 개선 방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중심으로

김슬기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1. 들어가며

한 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결국 가족도 알게 됐다. 이 사람은 실제로 날 죽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¹⁾

수사와 재판을 위해 내가 등장하는 성관계 영상을 직접 보고 나의 모습을 캡처하며 악몽 같은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한 점은 이런 고통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²⁾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기사가 연일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이버 공간은 음란물 공유나 성매매를 위한 접촉이 이

1) 세계일보 (2018, 5, 24), 알몸 사진에 신상정보까지..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의 절규. URL: <https://goo.gl/qMcF6q>

2) 한국경제TV (2018, 9, 4), 리벤지포르노 성범죄피해자의 '호소'..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URL: <https://goo.gl/NkpnC1>

루어지는 장소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서의 사이버 공간은 비대면성, 익명성, 시·공간적으로 무제한에 가까운 전파성 등의 특성이 본격적으로 작용하며 피해의 심각성을 극대화 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이하 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촬영 - 유포 - 단속 및 수사 - 처벌 - 피해자 지원 - 예방·교육의 각 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 종합 대책 발표 이후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각 실무 분야에서의 개선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처벌 법규를 개관하고 사례와 현황을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은 효율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현행 처벌 법규의 문제점과 관련 사례를 검토한 후 범죄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을 살펴본다.

2. 개념과 용어의 문제

‘몰카범죄’, 하루 평균 17.7건 발생해³⁾

여친 성관계 동영상 유출한 ‘리벤지 포르노’ 대학생 집유⁴⁾

인간 존엄 파괴하는 ‘사이버 性범죄’ 강력 대응해야⁵⁾

디지털 성범죄는 현행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작년 정부 종합 대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 제14조를 디지털 성범죄로 명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표현이다. 법적인 정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언론에서는 성폭력특별법 상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이외에 ‘몰카범죄’, ‘리벤지 포르노’, ‘사이버 성범죄’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표현상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우선,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사이버 성범죄’는 사이버 범죄와 성범죄의 실질을 모두 갖춘 범죄를 통칭하는 용어로 이해된다. 즉, 사이버 성범죄는 사이버 음란물 유포, 성매매를 위한 사이버 상의 접촉, 사이버 스토킹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몰카범죄’는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조명(條名)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인 관계로 이

3) 김명진 (2018, 9, 2). ‘몰카’ 범죄, 하루 평균 17.7건 발생해. <조선일보>. URL: <https://goo.gl/78ozLm>

4) 김선호 (2018, 8, 15). 여친 성관계 동영상 유출한 ‘리벤지 포르노’ 대학생 집유. <연합뉴스>. URL: <https://goo.gl/5qySqM>

5) 손우성·김기운 (2018, 8, 29). 인간 존엄 파괴하는 사이버 性범죄 강력 대응해야. <문화일보>. URL: <https://goo.gl/ZGdND6>



를 편의상 몰카범죄로 약칭하면서 사용되어 온 표현이다. 그런데 정부 종합 대책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일반인들에게 몰카는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로 와 닿을 가능성이 있어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한 성폭력특별법 제14조는 불법 촬영행위 뿐 아니라 촬영물을 불법 유통시키는 행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몰카범죄 용어 그 자체로는 동의 없는 유통행위를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또는 ‘복수 포르노’는 영미에서 동의 하에 촬영한 연인 사이의 성적인 영상을 이별 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가 문제되면서 등장한 용어이다. 그런데 영미에서는 해당 용어가 보복의 목적이 없거나 음란물 제작의 의도 없는 모든 범죄행위를 포섭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되면서 비동의 성적 영상(Nonconsensual pornography)⁶⁾이나 사적인 성적 영상 유포(Disclosing private sexual image)⁷⁾ 등의 용어로 대체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범죄 동기를 한정하고 피해자를 음란물 대상으로 취급하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표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⁸⁾

그렇다면 성폭력특별법 제14조를 칭하는 표현으로 정부가 채택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표현은 해당 범죄의 실질을 잘 표현한 것일까? ‘디지털’이라는 표현이 촬영물의 동의 없는 오프라인 유포와 같은 행위까지 포섭하기에 문제는 없는지, 사이버를 디지털이라는 단어로 대체한 것만으로 해당 구성요건행위의 범위가 불법촬영과 불법유포로 축소될 수 있는 것인지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좀 더 정확하게 구성요건의 실질을 규정할 수 있는 용어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⁹⁾

6)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표적 활동 기관인 Cyber Civil Rights Initiatives는 홈페이지에서 ‘Revenge Porno’란 용어 대신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참고 URL: <https://goo.gl/771c7F>).

7) 영국의 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33.

8) 김현아 (2017).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2호, 11.

9) 같은 취지, 김연수·정준섭 (2018).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부대책과 개선방안.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3호, 391.

3. 관련 처벌 규정

(1) 성폭력특별법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형사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이다.¹⁰⁾ 이 조 제1항 앞부분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불법 촬영 행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제1항 뒷부분은 이렇게 촬영된 영상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연한 전시, 상영 등 불법 유포 행위를 규정한다. 같은 항에서 불법촬영과 불법유포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두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동일하다.

한편 제1항의 유포행위는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에 촬영된 촬영물을 사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를 포섭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2항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항 유포행위 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되었다는 점은 동일함에도 촬영에 동의가 있는 촬영물이었다는 이유로 불법 유포의 형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스럽다. 제3항에서는 유포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불법성이 가중되므로 제1항 유포 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 성범죄, 특히 동의 없는 유포행위는 주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및 제7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도 처벌이 가능하다.¹¹⁾ 그런데 이 법은 성폭력특별법과 같이 성범죄를 전제로 한 법률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제1조)’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여기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음란물의 유포 행위’이다. 전통적으로 음란물 유포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10)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범죄 보다는 사회적 성폭속을 해하는 죄로 논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로서의 실질을 갖는 디지털 성범죄를 전면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디지털 성범죄의 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죄가 적용될 수 있다.¹²⁾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관한 이 법률 제11조 제1항은 불법 촬영행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배포·제공, 공연한 전시, 상영에 관한 동조 제2항과 일반적인 유포에 관한 제3항은 불법 유포행위에 적용된다.

디지털 성범죄의 촬영물을 음란물로 본다는 점에서는 정보통신망법과 유사해 보이지만 촬영 대상을 단순한 음란물 출연자가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자 피해자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과 법정형 역시 단순 음란물보다 높게 설정되어 위하력 있는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관련 사례 및 현황

동의 없는 촬영 행위를 「경범죄법」에 규정하고 있는 일본¹³⁾이나 연방 법률 차원에서 비동의 성적 영상 유포를 처벌하려는 노력이 아직 성공하지 못한 미국¹⁴⁾과 비교할 때 성폭력특별법에 관련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입법적으로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호법익이나 피해 결과 측면에서 처벌 대상과 대동소이한 행위임에도 명문 규정의 제한 상 처벌이 곤란한 행위들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례1) D는 V와 휴대전화 내 채팅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화하면서 V의 자위행위를 유도하고 그 영상을 계속 캡처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사례1은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저장하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불법 촬영행위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 제14조가 촬영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명시하고 있어 신체

12)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위 민폐방지조례(迷惑防止条例)로 불리는 조례를 통하여 도촬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14) 2015년에 이어 2016년 성적 사생활 보호 법률안(Intimate Privacy Protection Act, H.R.5896, 114th Cong.)이 발의된 바 있다.

의 실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고 신체가 나오는 영상을 촬영한 사례1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¹⁵⁾

사례2) V와 D는 교제하는 사이로 V는 하복부에 'D'라는 문신을 하고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로 촬영한 후 이를 D에게 보냈다. 이후 D는 SNS에 문신 및 음부가 일부 노출된 V가 전송한 사진 2장을 게시하였다.

사례2는 촬영 주체가 촬영대상자와 동일한 소위 셀카로 촬영된 사진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이다. 영미에서 가장 전형적인 비동의 성적 영상 유포행위로 평가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 신체는 '다른 사람'의 신체여야 하므로 이 경우 해당 조문에 의한 처벌은 불가능하다.¹⁶⁾

사례3) D는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V의 얼굴 사진에 성행위를 묘사한 음란물을 합성하여 마치 V가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였다.

사례3은 소위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행위로 합성과 편집의 기술 발전까지 더해져 사실상 촬영물의 불법 유포와 다를 바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 그러나 합성된 영상물은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고 '편집'은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 '촬영' 행위에 포함되지 못하므로 이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⁷⁾

사례4) D는 V와 교제하는 사이로 V의 동의하에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헤어진 이후 이 영상을 V의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전송하였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약식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고 그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15)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조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최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16)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 소정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529 판결).

17) 이혜미 (2018, 8, 21). 디지털성범죄는 뭐는데 아직 낮잠 자는 처벌법. <한국일보>. URL: <https://goo.gl/c6Cyeq>

사례4는 사례3까지와 달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검찰이 약식 명령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와 유사하게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를 몰래 촬영한 현직 판사 역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된 바 있다.¹⁸⁾ 약식절차의 의의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약식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식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도 죄질에 비례하는 양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벌금형의 선고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실행 선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역시 처벌 규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다.¹⁹⁾ 물론 사례4에서 불특정다수에 대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결정적 이유가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과 같이 구체적 사안에서의 양형 참작 사유는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개선 방안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개선 방안을 담은 다수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²⁰⁾ 각 법률안들이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결국 입법부의 근본적 임무는 성폭력범죄로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를 선별하고 그 불법성에 비례하는 법정형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선 사례에서 보았던 촬영 및 유포의 대상과 행위가 포섭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전파가능성을 고려하면 불법 유포 및 재유포에 대한 형이 불법촬영보다 더 중하게 설정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여기에 구체적 타당성과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양형기준의 마련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

사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개정 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많은 제도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콘텐츠 심의 및 조치와 관련하여 전담부서인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신설하고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한 결과 심의 및 조치에 소요되는 기

18) 홍지유 (2018, 8, 20). 전 여친 성관계 영상 유출범에 정식재판 청구도 안 한 검찰. <중앙일보>. URL: <https://goo.gl/5JeAFv>

19) 디지털 성범죄의 형선고에 대한 법원 공식통계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으나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 2018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자체적으로 판례(서울 지역 관할 각급 법원의 2011. 1. 1부터 2016. 4. 30까지 총 1,866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촬영행위의 1심 양형은 벌금형이 71.97%였으며 촬영 후 유포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28.79%로 나타났으며 전체 벌금형 중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78.95%로 나타났다.

20) 대표적으로 본인의 신체촬영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진선미 의원 발의안(의안번호 2002289),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를 규정한 김삼화 의원 발의안(의안번호 2004943),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 대상에 포함시킨 이주영 의원 발의안(2006043), 상습범 규정을 추가한 진선미 의원 발의안(의안번호 2007688), 촬영 행위와 유포 행위를 분리하여 그 법정형을 다르게 정한 정성호 의원 발의안(2009174), 촬영물 재편집 행위를 구성요건행위에 포함시킨 민경옥 의원 발의안(의안번호 2011983) 등이 있다.



간을 2017년 10.9일에서 2018년 4월 이후 3.2일로 단축시킨 바 있다.²¹⁾

각 단계별 대응 제도의 구체적, 기술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학술논문, 입법조사자료, 정책분석자료 등이 상세히 다루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전제로서 사회적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인터넷 환경 변화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춘 인식의 변화가 병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인식의 변화는 가해의 측면과 피해의 측면 모두에서 요구된다. 앞서 살펴본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의 용어 사용에서도 알 수 있듯 디지털 성범죄는 인격 살해로까지 평가될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성폭력적 가해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인식 변화가 더욱 중요한 것은 피해의 측면인데 ‘어떻게 처신했으면 그런 영상이 찍히나’, ‘애초에 그런 영상을 찍었으니 저런 일이 생기지와 같이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사회적 인식은 디지털 성범죄의 또 다른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의 상당 부분은 왜곡된 성 문화와 성 인식에 기인한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늘 같은 편에서 함께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호주 정부의 대응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종합 대책을 시작으로 각 단계별 제도적 개선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금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와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의지일 것이다. 🌐

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개월간 총 5,438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처리, 2018. 7. 4. 일자 보도자료.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에게 은밀하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때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에게 은밀하게 타인에 관한 험담을 하는 때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 형법의 조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公然)히 사실을 적시(揭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연(公然)히’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이며,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면 되지 굳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런데 여기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다 함은 ‘공연히’의 일반적인 용법으로서 ‘괘히’, 즉 ‘아무 까닭이나 실속이 없게’의 의미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공연히’는 한자로 ‘空然히’로 표기되며, 위 법문에서의 ‘公然히’는 법률적으로는 ‘공공연하게’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듣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라고 봄이 일반적이다. 또한, 특정인이나 한 사람에게만 그러한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관례이다(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569 판결 및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이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자기만이 보는 일기장에 기재한

다든지 그 다른 사람의 가족에게 얘기하는 경우와 같이, 그 외의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 형법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타인의 세평을 저하시키기에 적합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전파한 자'를 비방죄로 처벌하되, 다만 그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진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한다(독일형법 제186조 참조). 즉 독일에서 공연성은 처벌가중요소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성립요소이다.

한편, "명예훼손의 영역에 보태지는 모든 것은 자유로운 토론의 영역에서 빼앗아 온 것이다(Whatever is added to the field of libel is taken from the field of free debate)."는 유명한 말(이는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범위를 획기적으로 제한한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에 인용되었다. 376 U.S. 254, 281 참조)에서 보듯이, 명예훼손을 널리 인정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초석이라 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행위가 아니라 말(표현)에 대하여 민사책임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영국 등 상당수의 국가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였거나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며, 국제인권기구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공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는 입장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우선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가 보도를 한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있음이 명백하고, 보도가 아니라 일반 개인이 구두로 한 경우에도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을 하였다면 당연히 공연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 사람 또는 소수의 몇몇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경우는 이를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것 인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내용, 그 발언을 들은 상대방과 행위자 및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참조).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비리나 불륜에 관한 사실을 그 다른 사람의 부모 등 가까운 친척이나 절친(切親) 등에게 말한 경우는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전파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 또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음을 전제로 공연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자와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이야기한 경우(대

법원 2005. 12. 9. 선고 2004도2880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 사위, 매형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이비기자' 운운한 경우(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모와 피해자를 문병은 지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하더라'고 말한 경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상대방과 피해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이 부정되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방에 들어와 성교를 요구한 더러운 놈'이라고 욕설한 경우(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037 판결), 피고인이 처의 추궁을 모면하기 위하여 처에게 피해자와 동침하였다고 말한 경우(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86 판결)와 같이 발언내용에 따라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부정되고 있다.

또한 공연성이 이른바 범죄구성요건 요소이므로 행위자에게는 공연성에 대한 고의, 즉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한편, 최근의 대법원판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은 공연성의 인정 및 공연성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피고인 갑(甲)은 2013. 1.경 3층 상가를 신축하고, 2014. 7. 10. 〇〇〇마트의 영업을 시작하면서 피해자 을(乙)을 점장으로 고용하여 피해자에게 마트의 관리를 맡겼다. ② 피고인은 2014. 12. 20. 마트의 재고조사를 시행한 후 일부 품목과 금액의 손실이 발견되자 그때부터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마트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비리 여부를 확인하고 다녔다. ③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트 납품업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입점비를 받았다는 이야




기를 듣고 2015. 5. 20. 경 마트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인 공소외인 병(丙)을 사무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입점비를 얼마 주었느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공소외인이 입점비 지급사실을 부인하자, 피고인은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이니 정확히 답하라, 피해자가 여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서 조사 중이니 솔직히 답하라.”라며 질문을 계속하였다. ④ 피고인은 대화를 마치면서 공소외인에게 자신이 이런 것을 물어보았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혼자만 들은 것으로 하라고 당부하였고, 공소외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인천지법 2018. 2. 14. 선고 2017노4452 판결)은 명예훼손의 고의와 공연성을 모두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는 아마도 상대방 병이 피해자와 친척 등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공소외인을 불러 단둘이 이야기를 하였던 점, 피해자의 입점비 수수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한 후 공소외인에게 자신이 그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당부하였던 점, 공소외인이 그 후 피해자에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 판결은, 발언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사업상 거래관계에 불과하여 객관적으로 전파가능성(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연성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함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까지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건이다.

이는 종래 개인블로그의 비공개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에도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 8155 판결)나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 피해자의 지인인 이웃집 여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편지를 보낸 경우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79. 8. 14. 79도1517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연성의 인정 기준을 매우 엄격히 본 것(판결에 언급되었듯이 실제로 대화 상대방인 병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전파하지 아니한 사실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명예훼손죄를 비형사화(非刑事化)하는 추세에도 들어맞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인가, 광고인가? 위장된 광고성 기사의 윤리적 문제

임영호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언론도 상품이며 언론사도 기업일 뿐이다. 언론사는 시장에서 상품 판매 촉진과 광고 유치에 사활을 건다. 이 때문에 상업주의라는 반갑지 않은 폐해가 나타났고, 이는 언론인의 직업 윤리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특히 한국에서 상업주의라는 단어는 대개 상당히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언론의 상업주의가 반드시 해악만 초래한 것은 아니다. 상업주의 모델을 도입하면서 언론은 한편으로는 광고시장의 변덕에 종속되는 운명을 맞았지만, 그 대신에 정치적 후원 세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하는 긍정적 효과도 얻었다. 문제는 시장에서 사적 이윤 추구가 때로는 공적 서비스라는 언론 고유의 책임과 상충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양자의 균형과 조화는 언론의 존립기반이자 존재이유를 정당화해주는 핵심적인 과제나 마찬가지다.

광고는 언론의 상업적 성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제도다. 광고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상품 구매를 설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편향된 메시지로, 언론이 기업으로 유지되는 데 불가피한 요소다. 반면에 기사는 사실성과 시각의 균형을 생명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개 양자는 양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형식 측면에서 이 둘은 엄격히 구분하여 독자나 시청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거의 직업적 불문율로 굳어졌다. 만약 언론이 자사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 구분을 넘어선다면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직업 규범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언론의 현실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정확한 집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관계자는 가장 빈번히 적발되는 신문윤리 저촉 사례가 바로 '홍보성 기사'라고 밝혔다. 이는 광고주의 협찬, 후원을 받아 상품 판촉 목적으로 작성한 사실상 광고인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일반 기사 형식으로 위장한 광고를 말한다. 광고를 마치 기사처럼 보이도록 편집하거나 심지어 기자의 바이라인까지 붙이는 등 교묘한 수법이 만연하는 바람에, 순진한 독자들은 이를 기사라고 착각하게 될 우려가 크다. 부동산 광고를 기획기사로 위장한 형태에서 시작해, 여행 상품이나 다이어트 제품 등 각종 소비재 광고를 기사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유형의 윤리 위반 사례는 신문윤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다. 윤리적 위반 빈도로 볼 때, 광고성 기사는 한국 저널리즘의 가장 심각한 윤리적 병폐인 셈이다. 영어권에도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이라 불리는 단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광고성 기사가 한국 언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그 빈도와 정도가 유독 과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피해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 형태에서는 광고성 내용의 기사 게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독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숨긴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물론 이를 규제하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 체제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사들이 이 규정을 무시하는 사례가 줄지 않는다는 것은 언론의 윤리적 처신 문제를 넘어 매체의 신뢰성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점이다. 원래 한국 언론의 윤리적 수준 자체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사 경영이 급격히 악화하는 바람에 비윤리적 행태는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이후 후원이나 협찬에서 제약이 강화되면서 광고성 기사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처럼 광고성 기사로 독자나 시청자를 기만하는 사례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는 기업의 제품 홍보 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한 형태를 들 수 있다. 지난 8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삼성의 신제품 출시를 방송사들이 어떻게 다루었는지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다. 삼성이 갤럭시 노트9를 출시한다고 발표한 당일,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채널A, MBN만 이를 저녁 종합뉴스에서 보도했다. 3개사는 거의 똑같은 내용과 구성의 기사를 내보내 기업 홍보자료를 베낀 홍보성 보도라는 의혹을 자아냈다.

세 방송사의 보도에서는 기사 구성뿐 아니라 신제품 시연 장면, 관계자 인터뷰까지 유사했다. 신제품의 장점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마치 삼성전자의 신제품 광고 문안을 보는 듯한 착각까지 일으킬 만했다. 나아가 TV조선의 보도는 이 제품이 "부진에 빠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구해줄지가 관심입니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시각에서 사건을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보도 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방송심의규정은 “상품 등의 기능을 시연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행위이거나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경쟁업체나 경쟁상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보도는 보도윤리에 명백하게 저촉된다. 더구나 수시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제품 중 유독 삼성의 제품만을 우호적으로 부각한 보도태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행태는 메이저 광고주인 삼성전자를 의식한 사실상 의도적인 광고성 기사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광고와 기사를 구분하라는 보도윤리를 위반하는 사례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엄격히 구분되던 오락과 광고, 기사와 광고의 경계를 교묘하게 허무는 방식의 콘텐츠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 언론에서도 80년대의 탈규제 정책 이후 내용 규제가 느슨해지자 방송 콘텐츠로 위장한 광고가 급증했다. 이는 정보와 광고(commercial)를 융합한 형태라는 의미에서 ‘인포머셜(infomercial)’이라고 불린다. 최근 국내 방송에서도 오락 프로그램 속에 제품 광고를 끼워 넣은 PPL(Product Placement) 형태의 간접광고가 늘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위장된 광고의 남발은 즐거리와 무관하게 드라마의 흐름을 깨고 시청자의 몰입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 받고 있다. 콘텐츠와 광고의 융합은 오락과 보도 영역에서 모두 늘어나고 있는 부정적 관행이지만, 미치는 폐해는 보도기사의 광고화에서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기사의 광고화 추세에서 나타난 두 번째 형태는 언론이 자사나 모기업 홍보에 기사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 미디어 산업에서 인수합병이나 교차소유가 추세로 굳어지면서 특정 언론사가 다른 기업과 같은 이해관계로 엮이는 사례가 늘어났다. 실제로 90년대 미국에서는 방송 네트워크인 NBC가 자사 오락프로그램 홍보물을 뉴스 시간에 꼭지로 다뤄 빈축을 샀다. NBC는 자사 흥행작인 〈치어스(Cheers)〉의 최종회 홍보물을 네트워크 뉴스에서도 크게 다루고, 가맹사에도 배포해 로컬 뉴스로도 방영되도록 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요 종합 일간지들이 종편 채널에 진출한 후, 종편 채널 프로그램 홍보성 기사를 지면에 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논란이 되었다.

이처럼 자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이나 사안을 기사거리로 홍보하는 관행은 국내 언론에서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1970년대에는 고등학교 야구경기가 큰 인기를 끌었기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전국지를 비롯해 지역 일간지까지 앞다투어 야구대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인기 종목인데도 정작 신문에서는 경기 결과를 보기 어려웠다. 자사가 주최하는 대회는 자세하게 보도하고 타사 행사는 외면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언론사의 행태는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세 번째는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기사 내용과 제품 구매를 결합한 새로운 기사 양식이 등장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다. 예컨대, 〈뉴욕 타임즈〉는 오랫동안 수준 높은 서평 기사로 명망이 높았는

데, 온라인 판에서 독자들이 서평 기사를 읽은 후 클릭 한번으로 소개한 책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물론 뉴욕타임즈는 해당 서적의 매출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도록 되어 있었다. 뉴욕타임즈 같은 저명한 신문이 수수료 몇푼 때문에 광고와 기사 간의 경계라는 금기를 어겼다면 비판이 쏟아



진 것은 당연하다. 오프라인 신문에서는 기사와 광고 간의 구분을 오랫동안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겼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금기를 지키는 전통이 확립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른 새로운 수익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의 전통이 희박한 닷컴 매체에서는 윤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큰, 더 과감한 시도가 나오기도 한다. 가령,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포털은 기사 검색 결과를 도출하는 알고리즘과 수익 창출을 결부시키고 있다. 비용을 지불한 광고주의 정보를 검색결과에서 윗부분에 나오도록 배치하는 관행이 대표적이다. 현재 뉴스 환경에서 포털의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는 뉴스가치를 정보 제공자의 지불 능력과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언론으로서의 윤리적 규범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불길할 징후라 할 만하다.

전통적으로 미디어 산업에서는 공공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흐름이 대세였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산업’과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면 무엇이든 용인하는 분위기가 슬금슬금 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기업혁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시도들이 자칫 직업 윤리적 문제점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경영상의 필요성을 핑계 삼아 광고와 기사의 경계를 허물려는 다양한 시도는 크게 보면 언론의 존립 근거 자체를 흔드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 가령 광고주의 홍보성 기사를 자주 다루게 되면 단기적으로 영업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광고와 어울리지 않는 기사 내용에 대한 자기 검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언론은 어떤 극단적 상황에서도 신뢰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언론사 경영 측면에서도 보도의 사실성과 신뢰성이야말로 지금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에서도 소비자들이 언론을 찾도록 하는 유인이 된다. 기사의 광고화는 단순히 직업윤리 차원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위반 사례에 그치지 않고, 언론에게 생명과 같은 신뢰라는 핵심 자산을 뿌리부터 허물어뜨리는 위험한 도박 행위다. 미디어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함없이 지켜야 할 덕목은 존재한다. 🌐

보안되지 않은 무선 랜을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접속 제공자의 책임

심나리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 박사과정

1. 들어가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저작물을 대량으로 복제하거나 신속하게 배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매우 빈번해졌다. 이러한 유형의 저작권 침해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어느 정도 배포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또한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현재, 호텔이나 카페, 공공기관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무선 랜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기본적인 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무선 랜은 대부분 별도의 보안설정을 하지 않고 제공되며, 따라서 보안되지 않은 무선 랜을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접속 제공자의 책임범위가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는 자가 저작권 책임을 지며, 저작권 침해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6년 3월 유럽사법재판소 또한 보안되지 않은 무선 랜을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 제공자의 침해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독일에서는 이용자가 호텔이나 카페 등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보안되지 않은 무선 랜을 이용하며 인터넷에 접속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무

선 랜 제공자가 침해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호텔 또는 카페 운영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이는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민사책임의 한 유형으로 이른바 방해자책임(Störerhaftung)의 법리를 따른 것인데, 즉 타인의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개입하지

는 않았더라도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여 그 침해에 기여하였을 때 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¹⁾ 독일 연방대법원은 무선 인터넷의 보안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제3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무선 인터넷 연결 제공자에 대해 방해자책임을 인정해왔으며, 이로 인해 별도의 보안설정을 하지 않은 무선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운영자들은 해당 무선 인터넷 이용자들의 파일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텔레미디어법 제3차 개정을 통해 폐기되었다.

이와 같이 보안 조치되지 않은 무선 랜을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무선 랜 접속 제공자의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두 번에 걸친 텔레미디어법 개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무선 랜 접속 제공자의 법적 지위 및 이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II. 제2차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개정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2015년 3월 11일 텔레미디어법 제2차 개정을 위한 초안을 제출했고,²⁾ 연방정부는 2015년 9월 동 법률초안을 승인했다.³⁾ 동 초안은 무선 랜 제공자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중 인터넷 접속 제공자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했다. 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뮌헨 무선인터넷 핫스팟(Mattes/CC-BY 2.0 DE)



1) Urteil vom 12. 05. 2010 – I ZR 121/08 “우리 삶의 여름(Sommer unseres Lebens)” 무선 랜 접속을 제공하는 자가 초기 설정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아, 제3자가 용이하게 이 무선 랜을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 무선 랜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무선 랜 제공자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여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시켰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상업적 무선 랜 제공자도 방해자책임을 부담하는지, 보안 조치를 한 무선 랜의 접속 암호를 특정 이용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도 방해자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2) 참고 URL: <https://goo.gl/8EeFP6>

3) 참고 URL: <https://goo.gl/xWVeVZ>

조항	내용
제8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은, 이용자에게 무선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제8조 제4항	무선 랜을 통한 인터넷 접속을 영업상 또는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자는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즉 외부에 있는 제3자의 무선 랜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을 막기 위해 암호를 통한 적절한 보안조치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한 경우 또는 인터넷 접속이 침해행위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위법한 행위를 이유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8조 제5항	제3항에 따른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그 밖의 무선 랜 제공자는, 그가 제4항의 의미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접속을 위하여 이용자의 이름을 아는 경우, 이용자의 위법한 행위를 이유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016년 6월, 입법부는 무선 인터넷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럽사법재판소에서 계속 진행 중이던 ‘무선 인터넷 제공자의 방해자책임에 대한 법적 분쟁’, 이른바 소니뮤직/맥파덴 사건⁴⁾에서 광범위한 책임특권이 주장되며, 무선 랜 제공자는 권리침해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장애물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러한 견해를 따를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연방의회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기대되었다.⁵⁾

그러나 2016년 7월 27일 연방의회의 개정안에는 결국 법률초안의 제8조 제4항 및 제5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제8조 제3항만이 신설되었다.⁶⁾ 제8조 제3항에 따라,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인터넷 접속 제공자의 책임배제가 무선 랜 제공자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되었고, 이는 무선 랜 제공자를 방해자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켜 무선 랜의 확산을 촉진하고자 했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 목적으로 제8조 제1항의 인터넷 접속 제공자의 권한은 상업용, 또한 민간 무선인터넷 제공자로 명시적으로 확장되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자신의 무선 랜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는, 예컨대 도이치 텔레콤과 동일한 책임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III. 텔레미디어경 제3차 개정

1. 개정의 배경

텔레미디어법 개정의 이유는 무엇보다도 2016년 9월 15일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한 판결이었다.⁷⁾ 동 판결은 무선 랜 제공자가 제3자의 권리침해에 대해 경고를 받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제3자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나,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침해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선 랜 제공자를 상대로, 예컨대 암호입력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4) 2016. 9. 15. C-484/14 C-484/14, Tobias Mc Fadden/Sony Music Entertainment Germany GmbH

5)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인터넷 제공자 맥파덴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제3차 개정에서 설명한다.

6) 참고 URL: <https://goo.gl/9JL1AW>

을 주목한다. 경고를 피하기 위하여 무선 랜 제공자가 와이파이 핫스팟을 암호화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이 다시 발생했다. 이는 접근 가능한 무선 랜의 확산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제한하고 혁신을 방해한다. 새로운 텔레미디어법 개정안의 목적은 무선 랜 제공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다.

2. 개정의 주요 내용

2017년 6월 30일 독일연방의회는 텔레미디어법 제3차 개정을 위한 연방정부의 법안에 찬성했다. 개정안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일공유로 인한 계속되는 경고에 대해 공공 및 민간 무선 랜 제공자의 법적 명확성을 가져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초안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내용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제3차 개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조항	내용
제7조 제3항 제1문	온라인 접속 제공자는 일반 법률에 따라서 법원이나 행정관청의 명령을 근거로 정보를 삭제하거나 정보의 이용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제4항 제1문	어떠한 텔레미디어 서비스가 이용자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이러한 권리의 소유자가 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권리 소유자는 관련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게 제8조 제3항에 따라 권리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이용의 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제2문	인터넷 접속 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는 특히 이용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침해제거 또는 부작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이러한 청구의 주장 및 집행에 대한 모든 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8조 제4항	무선 랜 제공자는 관청에 의해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내지 저장하거나 또는 암호입력을 요구할 의무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는 무선 랜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제2차 개정안에서 논의되었던 텔레미디어법 제8조 제4항(무선 랜 제공자가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입증하고 자신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시 무선 랜이 권리침해를 위한 활동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용자의 확답을 받은 경우에만 금지명령에서 제외된다)은 제3차 개정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는 결국, 연방대법원이 일찍이 도입했던 방해자책임을 완전히 제거하고, 모두에게 개방되고 무료인 무선 인터넷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연방의회의 커다란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새로운 입법기간 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디지털화 또한 이미 2016년의

7) 참고 URL: <https://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6-09/cp160099de.pdf>, 맥파덴이 무료로 제공한 공개 무선 랜을 통한 소니뮤직 음반의 불법공유에 대해 소니 뮤직이 맥파덴에게 전송권 침해를 경고하고 손해배상 및 경고비용의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맥파덴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았고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니뮤직이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과 관련해 사법재판소에 요청된, 무선 랜 제공자가 전자상거래지침 제12조의 인터넷 접속 제공자로서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선결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무선 랜 제공자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러한 침해를 중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2차 개정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된 바 있다.⁸⁾ 즉 연방정부는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디지털 사회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따라서 “무선 핫스팟은 또한 암호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⁹⁾

3.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한 주요 규정들

1) 텔레미디어법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자신의 또는 제3자의 텔레미디어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위한 접속을 제공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이다(동법 제2조 제1호).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그가 어떠한 통신네트워크에서 전송하거나 또는 이용을 위한 접속을 제공한 제3의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규정은, 그가 전송을 야기한 것이 아니고(제8조 제1항 제1문 제1호), 전송된 정보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았으며(제2호), 정보를 선택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제3호)에 적용된다. 인터넷 접속 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는 특히 이용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침해제거 또는 부작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이러한 청구의 주장 및 집행에 대한 모든 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동항 제2문). 그러나 인터넷 접속 제공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동항 제3문).¹⁰⁾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또한 정보의 자동적인 단기간의 임시저장에 대해서도 또한, 이것이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전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사용되고 정보가 더 이상 저장되지 않는 한, 전송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2항). 이는 제3항에 따라 무선 랜 제공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따라서 일



8) 참고 URL: <https://goo.gl/VARbKP>

9) BT Drucksache 18/12202, 9-10.

10) 참고 URL: <https://goo.gl/9yRaFc>

정한 요건을 갖춘 무선 랜 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방해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2) EU 지침 등

정보사회저작권지침¹¹⁾ 제8조 제3항은, 중개자의 인터넷 제공이 제3자에 의해서 저작권 또는 저작권인의 침해에 이용되는 경우, 저작권자가 중개자에 대해 법원에 의한 금지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회원국에게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지침¹²⁾ 제11조 제3문에 따라 회원국은, 관할법원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확정된 경우 계속된 침해 행위에 대한 관련 관리의 금지명령 발급을 보장한다.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규정된 한도에서, 이러한 금지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¹³⁾

텔레미디어법 제8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인터넷 접속 제공자의 방해자책임은 배제된다. 그러나 제7조 제4항을 통해 무선 랜을 통한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는 이용자의 정보접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청구권이 권리자에게 인정되므로, EU지침과 일치한다.

4.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최근의 판례¹⁴⁾

연방사법재판소는 텔레미디어법 제8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무선 인터넷 및 토르 출구노드를 통한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인터넷 연결을 통해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3자가 저지른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부작위를 통한 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컴퓨터 게임 ‘데드 아일랜드(Dead Island)’의 독점적인 사용권자이며, 피고는 인터넷 연결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그는 자신의 IP 주소에서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한 무선 인터넷 핫스팟 다섯 개와 토르 네트워크(‘토르 출구노드’)에서 수신되는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한다. 2013년 1월 6일 “데드 아일랜드” 프로그램이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피고의 인터넷 연결을 통해 제공되었으며, 이에

11) Richtlinie 2001/29/EG zur Harmonisierung bestimmter Aspekte des Urheberrechts und der verwandten Schutzrechte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12) Richtlinie 2004/48/EG zur Durchsetzung der Rechte des geistigen Eigentums

13) 참고 URL: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17/kw22-de-telemediengesetz/507556>

14) BGH, Urteil vom 26. 07. 2018 – I ZR 64/17 – Dead Island; LG Düsseldorf, Urteil vom 13. 01. 2016 – 12 O 101/15 (1심); OLG Düsseldorf, Urteil vom 16. 03. 2017 – I – 20 U 17/16 (2심), 참고 URL: <https://goo.gl/6b7Fm7>

대해 원고는 2013년 3월 피고에게 경고했다. 이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001년 그의 인터넷 연결을 매개로 한, 파일 공유를 통한 저작권침해에 관해 수차례 경고한 적 있다. 원고가 자신의 저작물이 자신의 동의 없이 피고의 무선 랜을 통해 P2P 네트워크에서 다운로드되었고, 따라서 피고에게 방해자책임 및 손해배상책임과 경고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자신이 텔레미디어법에 의해 책임이 면제되는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 해당되어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2) 1심법원 및 항소법원의 판결

원고는 피고에 대해 부작위 명령 및 경고비용의 상환을 청구했으며, 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항소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는데, 이는 이용자가 자신의 무선 랜을 통한 인터넷 연결을 매개로 하여 제3자가 컴퓨터 게임이나 그 일부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피고에게 부과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다. 즉 피고는 자신의 무선 랜을 제공하면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함으로써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방해자책임을 져야 한다.

3) 연방사법재판소의 결정

연방사법재판소는 피고의 상고에 대해 피고의 방해자책임을 부정하고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텔레미디어법 제3차 개정법률에 따라 무선 랜 제공자는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 포함되며,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이용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침해 제거 또는 장래의 침해를 방지할 부작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가 침해를 경고한 시점의 텔레미디어법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는 적법하며, 따라서 경고비용청구의 인정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다.

IV. 텔레미디어법 개정의 효과

1.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한도

텔레미디어법 개정을 통하여 입법자가 무엇을 원했는지에 대하여, 2016년 6월 2일 연방의회에서 일어난 논쟁 중 녹색정당 의원 콘스탄틴 폰 노츠(Konstantin von Notz) 박사는 “메르켈 총리와 연방의회의 의원들이 민간에게 파일공유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특히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츠에 따르면 ‘방해자책임’ 법리는 디지털화라는 근본적인 원칙에 제동을 거는 장치였고, 이는 무선 랜을 보유한 가정의 가장이나 카페주인 등이 다양한 근거로 인해 잘못된 경고의 수신인(책임자)


이 되는 법적 상황을 만들었다. 이제까지의 방해자책임은 권리자의 관점에서 물론 효과적인 요소였기는 하지만, 이는 이제 폐기되었다.¹⁵⁾

텔레미디어법 제3차 개정에 따라 무선 랜을 통한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앞으로 이용자의 법률위반에 대해 경고하거나 책임을 지는 두려움 없이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텔레미디어법 개정의 목적은 무선 랜 제공자에 대한 책임한도의 범위를 규율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선 랜 제공자는 관청에 의해,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거나 암호입력을 요구할 의무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며, 따라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무선 랜은 법률개정으로 더 광범위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해 기업뿐만 아니라, 각 지방은 학교, 시청 또는 도서관에 보안되지 않은 무선 랜을 제공하고자 한다.¹⁶⁾

2. 파일공유로 인한 경고에 대한 효과

텔레미디어법 제3차 개정으로 단지 방해자책임만이 폐지되었을 뿐, 파일공유로 인해 경고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지적된다. 프랑크푸르트 주 지방법원 판사인 만츠(Mantz) 박사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무선 랜의 제공자에 대한 책임특권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기본적으로 환영하나, 법기술적 결함으로 인하여 법적 확실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호함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했다.

텔레미디어법 개정이 무선 랜을 제공한 민간인의 방어를 위해, 불법적인 파일공유로 인한 경고 조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민간 무선 랜 제공자가 텔레미디어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의 적용대상에 속하고, 따라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경고를 받은 무선 랜 제공자가 자신의 2차적인 입증책임을 법정에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는 방해자로서가 아니라 행위자로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나 2차적인 입증책임은 실제 성공하기 어렵고 따라서 많은 경우 민간이 패소하게 되는 결과를 이끈다.¹⁷⁾ 부모와 자녀와 함께 쓰는 무선 랜을 통한 불법 파일공유가 문제됐던 최근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부모가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행위자로서 유죄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행위(책임)를 돌리는 경우에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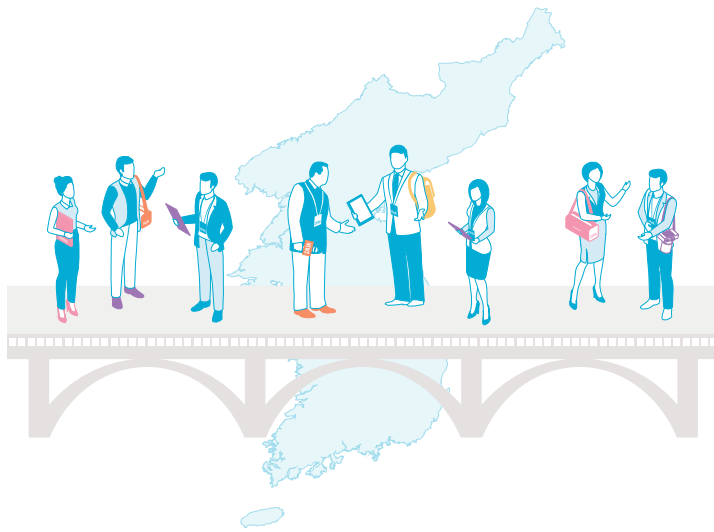
따라서 실무상 2차적인 입증책임을 수행하기 어려운 민간 무선 랜 제공자가, 이용자의 불법적인 파일공유를 이유로 한 경고에 대해 어떠한 방어방법을 고안할 수 있는지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15) 참고 URL: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17/kw22-de-telemediengesetz/507556>.

16) 참고 URL: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17/kw22-de-telemediengesetz/507556>.

17) Mantz, GRUR 2017, 969, 972.

18) BGH, Urteil vom 30. 03. 2017, -I ZR 19/16.



한반도는 올해 3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북한보도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언론중재」 가을호는
북한보도의 특수성에 기인한 고민들과 해결책을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남·북 언론보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남·북 언론중재기구의
가능성에 관해서도 살펴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2호 논문 공모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2호에 수록할 연구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공모분야

<연구논문>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 (언론법제 관련 판례평석 포함)

응모자격

1.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2. 관련분야의 전문가자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출마감

<연구논문>

논문 제출마감: 2018년 11월 13일(화)까지

* 제출서류 및 양식 등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제출방법

이메일(journal@pac.or.kr)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시거나 연구팀(02-397-3042)으로 문의바랍니다.